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진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 2017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834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를 필요로 하며,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하는 의무 존재
 - 국고보조사업 규모 증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변화
 -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분권 확대 추진
 - 재정분권 확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
 - 현행 지방세 구조 하에서 자체재원 증가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광역-기초 간 합리적인 자원분담 기준 마련 필요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에 대한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기준이 거의 전무한 실정

-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기준을 대략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부족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관련 법령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은 「지방재정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
-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광역-기초간의 자원분담 기준 설정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111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만 제시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또한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설정되어 있는 111개 사업 중 31개의 사업이 기준부담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들 중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가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6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은 구체적인 차등보조율 기준 제시
- 인천과 경기는 인하보조율 구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관련 현황 검토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광역-기초 간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기준부담률 제시
-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의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기준부담률이 도에 비해 높은 수준
- 분야별 기준부담률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업이 45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의 경우 100% 부담하는 사업이 69.2%(18개)로 가장 높은 수준
- 2016년 기준 534개 국고보조사업 중 시·도 기준부담률이 20-30% 미만인 사업이 83개(15.5%)로 가장 많고, 50% 미만 사업은 324개로 분석대상의 60.7% 수준
- 7개 특별·광역시의 평균 시·도비 비중은 79.3%로 높은 반면, 8개 도의 평균 시·도비 비중은 32.7%로 낮은 수준

□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기준 개선방향

-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 제시
 - 중앙-지방 간 기준보조율과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여 명확한 자원분담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121개의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 사업 중 국비 100% 사업을 제외하고 68개 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규정되지 않은 실정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 광역, 기초 간 자원분담 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안 검토
 - 일본 야마나시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자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 광역, 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부담금 사업’은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50%, 광역 25%, 기초25%의 비용부담 비율 규정
- 둘째, 111개 사업에 대한 현행 기준부담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현재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이 설정되어 있는 111개 사업에 대한 실제 부담률을 검토한 결과 31개 사업이 기준부담률보다 낮은 수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광역-기초간 기준 부담률이 설정되어 있는 111개 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부담률 준수 권고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자원분담 기준 마련
- 셋째,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기준부담률 개선(안)은 사무 성격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과 사무 유형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으로 구분
 - 사무 성격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은 개별 사무의 성격에 따라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2-3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과 적용 가능한 모든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
 - 사무 유형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은 1단계로 개별 사무의 기준부담률을 설정하고, 2단계로 동일 사무군 또는 사무 유형에 따라 기준부담률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2-track) 검토
- 넷째, 광역-기초 간 차등보조율 적용에 있어 인상보조율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칙 개정 필요
 - 광역-기초 간 자원분담에 있어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인상보조율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의 조례는 인하보조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차등보조율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9
제2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1
제1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1.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의 기본방향	13
2.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17
3. 공공서비스 자원분담 기준의 적용 가능성 ·	20
제2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의 법적 근거	24
1.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관련 법령	24
2.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관련 법령	31
3.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관련 자치법규	35
제3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분석	39
제1절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 현황 분석	41
1.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의 기준부담률 현황	41



2.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기준부담률 현황	43
제2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분석	46
1.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46
2. 기준부담률 규정과 실제 부담률간 차이 ..	52
제4장 주요 국가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	67
제1절 일본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69
1.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69
2. 국고지출금의 의의	70
3.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의 개요	74
4.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사례: 야마나시(山梨)현	77
제2절 프랑스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84
1.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84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전 ...	87
3. 지방자치단체간 자원분담 기준	90
4. 지방자치단체간 자원분담 사례: CPER 2015-2020	94
제5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개선방향	97
제1절 기준부담률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99
1. 기준부담률 적용대상 및 범위	99
2. 기준부담률 개선(안)	106



제2절 차등보조율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110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111

[부록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134

[부록 3] 일본 야마나시현의 국고지출금 부담비율
사례 139

[부록 4] 일본 「개호보험법」 상의 국가-광역-기초 간
비용부담 규정 185

[부록 5] 환경 관련 시설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190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1-1>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추이	4
<표 2-1> Shah(1994)의 사무배분 기준	16
<표 2-2>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및 보조율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19
<표 2-3> 필수적·수익적 서비스 구분에 따른 재원분담 기준	21
<표 2-4> 사회적 편익 및 수익귀속에 따른 부담기준	22
<표 2-5> 가치재의 사적 혜택을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23
<표 2-6>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기준의 중복(예시)	29
<표 2-7>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관련 자치법규	36
<표 2-8>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	37
<표 2-9>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인천)	37
<표 3-1> 시·도별 기준부담률 현황 (행정안전부령 기준)	41
<표 3-2> 분야별 기준부담률 현황 (행정안전부령 기준)	42
<표 3-3> 시·도별 기준부담률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	45
<표 3-4>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재원분담 현황 (기준부담률별)	46
<표 3-5>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재원분담 현황 (소관부처별)	48
<표 3-6>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재원분담 현황 (회계별)	49





<표 3-7>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 (대응지방비 규모별)	50
<표 3-8>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 (국고보조율별)	51
<표 3-9>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 (시·도별)	52
<표 3-10>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기준부담률 30%)	53
<표 3-11>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기준부담률 50%)	54
<표 3-12>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기준부담률 70%)	56
<표 3-13>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기준부담률 100%)	57
<표 3-14>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교육 분야)	58
<표 3-15>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농림해양수산 분야)	59
<표 3-16>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문화관광 분야)	61
<표 3-17>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보건복지 분야)	63
<표 3-18>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산업중소기업 분야)	64
<표 3-19>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수송 및 교통 분야)	65
<표 3-20>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	65

<표 3-21>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 (환경 분야)	66
<표 4-1>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국고지출금 개혁	71
<표 4-2> 국고지출금 개혁의 경과 및 주요 내용	72
<표 4-3>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2015년 기준)	74
<표 4-4> 광역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2015년 기준)	76
<표 4-5>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기준부담률별)	78
<표 4-6>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사회보전국)	79
<표 4-7>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삼림환경국)	80
<표 4-8>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산업노동국)	80
<표 4-9>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현토정비국)	81
<표 4-10>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종합정책국)	82
<표 4-11>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리니어교통국)	82
<표 4-12>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교육위원회)	83
<표 4-13>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2016년 기준)	84
<표 4-14>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2016년 기준) ·	88
<표 4-15> 지역간 협약유형에 따른 비용분담 현황	94



<표 4-16>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 2015-2020의
비용분담 현황 96

<표 5-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기준 100

<표 5-2> 사무 성격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1(예시) · 107

<표 5-3> 사무 성격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2(예시)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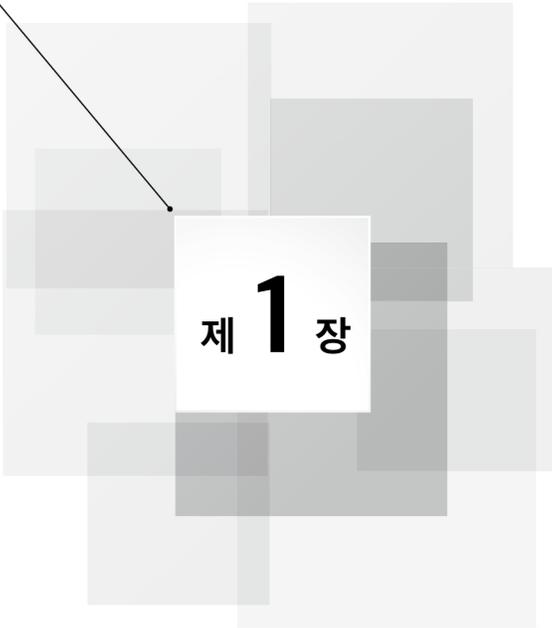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4-1>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주요 역할분담 70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의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 2017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834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함
 -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증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을 어렵고 하고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2017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5.2조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은 21.7조 원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08년 12.1조 원에서 2017년 21.7조 원으로 증가하였음(연평균 증가율 6.7%)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표 1-1>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추이

(당초예산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08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지방예산(A)	125.0	137.5	156.9	163.6	173.3	184.6	193.2	5.0%
국고보조사업(B) (비중 B/A)	35.0 (28.0%)	41.8 (30.4%)	56.7 (36.2%)	61.1 (37.3%)	64.4 (37.2%)	67.1 (36.4%)	65.2 (33.8%)	7.2%
• 국고보조금 (구성비)	22.9 (65%)	26.5 (64%)	34.0 (60%)	37.8 (62%)	41.4 (64%)	42.8 (64%)	43.5 (67%)	7.4%
• 지방비 (구성비)	12.1 (33%)	15.2 (36%)	22.7 (40%)	23.3 (38%)	23.0 (36%)	24.3 (36%)	21.7 (33%)	6.7%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각 년도

나.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변화

-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개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재정분권 확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과 지역밀착형 사무의 이양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음

-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 원칙과 기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조정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지방세 구조 하에서 자체재원 증가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협의·조정이 필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다. 광역-기초간 합리적인 자원분담 기준 부재

- 일부 선행연구들이 중앙-지방간 관계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사무배분 및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국가적 최저수준의 보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적 최저수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원분담 기준은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에 대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은 지금까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선행연구들은 중앙-지방간 관계에서의 자원분담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반면 광역-기초간 관계에서의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최병호·정종필(2007)의 연구가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파급효과, 국가시책 사업여부,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개선 필요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증가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대략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기준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준부담률의 경우에도 사업성격이나 재정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목적

가.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5개 광역자치단체¹⁾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자원분담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1)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에 대한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재원분담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재원분담 기준이 제시
되어 있는 사업과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함
- 재원분담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사업은 현재 재원분담 기준과 실제 기준부
담률이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재원분담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실제 기
준부담률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에 대한 집단별 분석
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광역자치단체별, 기준부담률별, 소관부처별, 회계별, 대응지방비 규모별 등
다양한 집단별 현황 분석을 통해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주요 국가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
초간 재원분담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이론, 기준, 현황, 문제
점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다.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 관련 개선방향 제시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에 대한 광역-기초간 합리적 재원분담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대상사업의 측면에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재원분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의 여부를 고려하고자 함

- 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 실무적 측면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에 대한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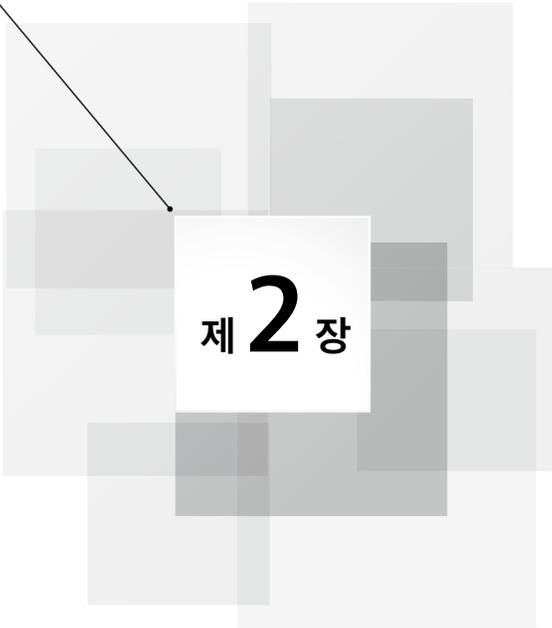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2016년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을 분석함
- 공간적 범위: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내용적 범위: 2016년 기준 839개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100% 사업, 세종 및 제주 사업 등을 제외한 534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함
- 법령검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현황분석: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사례분석: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면접조사: 전문가 및 공무원(광역, 기초)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재원분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함



제 2 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의 법적 근거

KRILA

제 2 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의 기본방향

가. 사무배분 원칙의 방향성

- 이론적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은 지방자치 이론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책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첫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 기준은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하며, 반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사업,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책임성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주민참여 활성화와 외부통제를 통한 대응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됨
-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대부분 중앙-지방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 연구에서는 중앙-지방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기준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음
 - 즉,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기준이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기준에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나. 외국의 사무배분 기준

1)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의 연구

- ACIR(1982)은 정부계층간 기능 및 자원배분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 재정적 형평성, 정치적 책임성, 행정적 효과성을 제시하였음
- 첫째, 경제적 효율성은 규모의 경제, 서비스 경쟁, 공공가격으로 구성됨
 - 규모의 경제 : 관할권의 범위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고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하지 않을 만큼 작아야 함
 - 서비스 경쟁 :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범위와 효과성 수준 내에서 대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공공가격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둘째, 재정적 형평성은 경제적 외부효과와 재정적 형평화로 구성됨
 - 경제적 외부효과 : 서비스제공 비용과 편익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이거나 누출효과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재정적 형평화 : 서비스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재정력을 보유하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정치적 책임성은 접근·통제와 주민참여로 구성됨
 - 접근·통제 :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민들에 의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며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주민참여 : 기능수행에 있어 활발하고 생산적인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넷째, 행정적 효과성은 일반목적적 특성, 지리적 적합성, 관리능력, 정부계층간 신축성, 법적 적합성으로 구성됨
 - 일반목적적 특성 : 다양한 기능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기능들을 균형화시킬 수 있어야 함
 - 지리적 적합성 :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영역을 관할하여야 함
 - 관리능력 : 서비스제공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고, 성과의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업목표를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정부계층간 신축성 : 정부계층간 유기적 협력과 지역간 기능중복 및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법적 적합성 : 기능수행에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함

2) Shah의 연구

- Shah(1994)는 연방국가 뿐만 아니라 단일국가의 경우에도 재정연방주의 문헌에서 주장하는 정부계층간 지출기능배분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함
-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에 필요한 외부성의 범위, 규모의 경제, 그리고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기능별로 적절한 정부계층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측면에서 상하수도, 쓰레기, 소방, 지방도로 등을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무로 제시하고 있음

<표 2-1> Shah(1994)의 사무배분 기준

구분	정책/규범/감독	설비/관리	비고
국방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외교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국제무역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금융정책·통화·은행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각 주간 통상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개인생활보조	중앙	중앙	재분배
산업장려	중앙	중앙	지역개발과 산업
이민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실업보험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항공·철도	중앙	중앙	전국적 편익과 비용
재정정책	중앙, 광역	중앙, 광역, 기초	조정가능
법규	중앙	중앙, 광역, 기초	국내공동시장
천연자원	중앙	중앙, 광역, 기초	공동시장장려
환경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편익과 비용이 지역에 귀착될 가능성 존재
산업경제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관할권역을 초월
교육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가치재
보건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가치재
사회보장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가치재
경찰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주로 지역에 귀착
상하수도·쓰레기	기초	기초	주로 지역에 귀착
소방	기초	기초	주로 지역에 귀착
공원·오락시설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지역 책임 중요, 국가나 광역단위 설치가능
고속도로	-	-	-
주간	중앙	광역, 기초	국내 공동시장
주	광역	광역, 기초	광역적 편익과 비용
지역	광역	광역, 기초	지역적 귀착
지방	기초	기초	지역적 편익과 비용

자료: Shah(1994).

다.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배분 기준

-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의 배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앙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①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업, ② 전국적·통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 활동 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업, ③ 전국적 규모와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시책 및 사업(내셔널 미니멈의 유지·달성, 전국적 규모·관점에서 요구되는 국가사회간접자본정비 등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한정함), ④ 국가주권성, 전국적 발전 및 기획성, 전국적 법제도화 및 전국적 지침, 대외성, 고도의 기술성·특수성, 전문성, 광역성, 국가경제성, 전국적 배분성,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두 번째로 사업특성은 다음의 5가지에 기초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① 편익지역의 공간적 제한, ② 규모의 경제, ③ 서비스 공급의 통일화/다양화, ④ 공공재의 순수성, ⑤ 누출효과(spillover) 등임
- 마지막으로 실천적 기준은 자치단체의 기관역량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행 역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능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인적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가.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선행연구

- 최병호·정종필(2007)은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광역과 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색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음

- 광역과 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파급효과 외에 사업의 성격, 사업의 유형, 사업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의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성격은 동 지침 상의 사업의 성질과 근거법령 그리고 시행주체는 동 지침의 사업주체를 활용하였음
- 이 외에 사업규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분류하였으나, 이 역시 최종 유형화단계에서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음

나. 중앙-지방간 자원분담 기준 선행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앙과 지방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음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및 자원부담 기준에 관한 연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됨
 - ① 국고보조율 산정을 위한 유형화 연구, ②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배분을 위한 유형화 연구로 구분됨
 - 이 중에서 국고보조율 산정을 위한 유형화 연구는 파급효과를 핵심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율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파급효과 또는 지역간 파급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 공급을 담당할 경우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고보조금이 이를 해소 또는 내부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역할로 인해 파급효과만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출을 장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가치재의 공급을 증대시키고(merit goods의 공급), 주민들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서비스 공급

을 보장하며, 지역간 공급수준의 격차 시정 등 국고보조금의 또 다른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됨

-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파급효과만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기보다 파급효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음
 - 파급효과 이외의 기준으로 국가의 이해관계(임성일, 1991; 권오성, 2006; 이창균, 2001), 사업주체 및 사업비 규모(최병호·정종필, 2007), 공공재적 특성 및 예산규모(문병기, 2008), 중앙의 정책의지(조임곤, 2009), 사업성격 및 사업주체(최병호 외, 2012), 국가최소수준 및 수비범위(이원희, 2013)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표 2-2>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및 보조율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구분	대상	유형화기준	유형화단계
최병호·정종필(2007)	광역-기초	파급효과 국가시책사업 여부 사업주체 사업비규모	광역, 지역, 국지적 국가핵심, 일반사업
임성일·서정섭(1991)	중앙-지방	파급효과 국가의 이해관계	전국적, 광역적, 지역적, 국지적
이창균(2001)	중앙-지방	파급효과 보조사업 성격 자치단체 사무성격	국가적 사무, 국가우선/정책사무 광역적/지역파급효과, 지역적 사무
권오성(2006)	중앙-지방	파급효과 국가와 지자체 이해관계	국가사무, 공통사무/국가우선 공통사무/공통이해, 공통사무/지방우선 국가필요/저외부효과
문병기(2008)	중앙-지방	파급효과 국가기본정책 정책유형별 특성 공공재적 성격 사업예산규모	국가적, 비국가적, 규제, 재분배, 개발 순수, 지방재, 가치재

구분	대상	유형화기준	유형화단계
조임곤(2009)	중앙-지방	파급효과 중앙정부 정책의지 사업예산규모	핵심, 장려, 일반 전국, 광역, 지역, 국지
최병호 외(2012)	중앙-지방	주기준: 파급효과, 사업성격 보조기준: 사업주체, 사업규모	전국, 지역, 국지 국가의무, 시책, 일반
이원희 외(2013)	중앙-지방	파급효과, 국가최소수준 수비범위 공동체(solidarity)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은

출처: 서정섭·주운현·윤태섭(2016) 중 발췌 정리.

3. 공공서비스 자원분담 기준의 적용 가능성

가. 필수성과 수익성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선택적인 서비스 보다 원가보상률이 낮아야 할 것이며(공공재의 성격), 서비스의 공급목적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급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야 하며(사적재의 성격) 경우에 따라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
- 첫째, 필수적·비수익적 서비스로서 필수적 서비스가 비배제적·비경합적이면 일반재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이 소비자에게 배타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하되 그 수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모든 주민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적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례: 상하수도 기본사용료,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 둘째, 선택적·비수익적 서비스는 서비스 소비자가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여 요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사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등
- 셋째, 필수적·수익적 서비스는 가급적 일반재원으로 공급하거나 요금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생처리장사용료, 화장장사용료와 같이 그 편익이 소비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수수료는 현실화 될 수 있음
- 넷째, 선택적·수익적 서비스는 민간의 공급기능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골재채취, 무역업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원가보상률을 10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표 2-3> 필수적·수익적 서비스 구분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기준	필수적 서비스	선택적 서비스
수익적서비스	(Ⅰ) 상하수도 기본사용, 주민등초본 발급	(Ⅱ) 예방접종 수수료
비수익적서비스	(Ⅲ) 위생처리장 사용, 화장장 사용	(Ⅳ) 골재채취료, 무역업허가

나. 사회적 편익과 수익귀속 여부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 노세 테쓰야(能勢哲也)(1981)는 공공서비스가 공공재와 사적재 구분을 사회적 편익에 따라 공공재, 준공공재, 사적재로 구분하고, 수익의 귀속여부에 따라 전국민, 전시민, 지역주민, 개인으로 구분하였음
- 즉,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세로서 부담하여야 하며, 준공공재는 조세와 사용자 부담으로, 사적재는 사용자 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표 2-4> 사회적 편익 및 수익귀속에 따른 부담기준

기준		0% ← 공공성(사회적 편익) → 100%		
		공공재 (조세부담)	준공공재 (조세+사용자부담)	사적재 (사용자부담)
0% ↑ 가 분 성 (서비스의 귀속) ↓ 100%	전국민	(I) 의무교육, 국방, 경찰, 소방, 외교	(IV) 고속도로 이용료	-
	지역주민	(II) (60%) 주민등초본 발급, 청소, 공원	(V) 고등교육, 지역교통, 병원, 보육원, 유치원	(VII) (90%) 병원, 유치원, 보육원
	개인	(III) (70%) 생활부조, 생활보호서비스	(VI) 사회보험, 공공주택	(VIII) (100%) 주차장사용료, 택지분양

다. 가치재의 공공성 정도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 사용료의 측정에 있어 공공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한 Kelvin Neels 와 Michael Caggiano(1984)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편익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성질에 따라 구분함
 - 재화를 공공재, 사적재, 가치재로 구분하여 사용자부과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 특히 공공재와 사적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재의 재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
 - 7개 지표들의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가중치는 테스트포스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정됨
 - 총합을 100점을 기준으로 각 가중치의 값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최하 5점으로 정하고, 해당되는 점수의 비율대로 원가보상율을 결정함

<표 2-5> 가치재의 사적 혜택을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기준	점수
1	해당서비스의 소비가 다른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편익만을 파급시키는가?	25
2	편익을 누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20
3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법률적·행정적으로 가능한가?	15
4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인한 정치적 저항은 무시할만한가?	15
5	사용료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가?	10
6	사용료가 부과되면 경제적 효율성은 제고되는가?	10
7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적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문제되지 않는가?	5

제2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의 법적 근거

1.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관련 법령

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개정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14, 2017.4.18]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

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 7개 유형의 국가사무를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나.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 동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사무를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시·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등의 6개 유형임
- 이러한 6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만 이상의 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는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동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동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수행함
 -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유형 57개 사무를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록 1 참조

- 그러나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 기준은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30개의 세부 사무가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중복되어 있음

<표 2-6>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기준의 중복(예시)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마. 국민건강증진 사업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2.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관련 법령

가. 중앙-지방간 자원분담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자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0조는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 동법 제21조는 부담금과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함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동법 제22조는 경비 부담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8조는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기준부담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 동 규칙 제3조는 기준부담률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 ①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②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③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④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관련 자치법규

-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가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9개 시·도는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표 2-7>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관련 자치법규

구분	법적 근거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서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95개 사업 (조례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재정력 기준 4단계 구분 (조례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인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34개 사업 (조례 제33조, 시행규칙 제4조)	재정력 기준 5단계 구분 (조례 제33조, 시행규칙 제5조)
경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30%, 도지사 조정 가능 (조례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	인건비 자체 총당능력과 재정력 기준 6단계 구분 (조례 제22조, 시행규칙 제4조)
충북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90개 사업, 청주시와 기타 시·군 구분 (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4조)	-
전남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78개 사업 (조례 제23조, 시행규칙 제2조)	-
경남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64개 사업 (조례 제23조, 시행규칙 제4조)	재정자주도 기준, 전체 시군의 1/3 이하만 인상 (조례 제24조, 시행규칙 제5조)

-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는 사업별로 시·도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30%의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 인천,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가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은 구체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충북은 별도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업에서 충주시와 나머지 시·군의 기준보조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95개 사무에 대한 시비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 재정력에 따라서 4개 구간(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2-8>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

구분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재정력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인천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천광역시와 구·군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34개 사무에 대한 시비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 재정력에 따라 5개 구간(+20%p 이내, +10%p 이내, 기준률, -10%p 이내, -20%p 이내)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2-9>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인천)

구분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재정력	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 이상
보조율	기준률 +20%p 이내	기준률 +10%p 이내	기준률	기준률 -10%p 이내	기준률 -20%p 이내

-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경기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도비보조율은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하여 인상보조율 3개 구간과 인하보조율 3개 구간 등 총 6개 구간을 적용하고 있음
 -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매년 도지사가 결정함
- 충북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충청북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90개 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 차등보조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청주시와 기타 시·군의 기준보조율을 일부 사업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전남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전라남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78개 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 차등보조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경남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경상남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63개 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며,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전체 시·군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제 3 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분석

제1절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 현황 분석

제2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분석

KRILA

제 3 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분석

제1절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 현황 분석

1.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의 기준부담률 현황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음
 - 총 111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음
 -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군 간의 기준부담률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의료보호,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사업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사회보장비 지수, 재정자주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유형)
- 기준부담률을 통해서 볼 때, 특별·광역시가 도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특별·광역시가 100% 부담하는 사업은 43개(37.7%)인 반면에, 도가 100% 부담하는 사업은 23개(20.7%)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 시·도별 기준부담률 현황(행정안전부령 기준)

(단위: 개, %)

구분	특별·광역시	도
0%	3(2.7)	5(4.5)
30%	8(7.2)	11(9.9)
50%	55(49.5%)	70(63.1)
70%	2(1.8)	2(1.8)
100%	43(38.7)	23(20.7)
계	111(100.0)	111(100.0)

- 특별·광역시의 기준부담률이 0%인 사업은 어장 정화,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시·도 지도선 건조 등 3개임
 - 이들 3개 사업은 자치구의 기준부담률도 0%로 특별·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의미함²⁾
- 도의 기준부담률이 0%인 사업은 비위생매립지정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도시철도 운영보조,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등 5개임
 - 비위생매립지정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도시철도 운영보조,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은 시·군의 기준부담률도 0%임³⁾
 - 반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시·군의 기준부담률이 100%임

<표 3-2> 분야별 기준부담률 현황(행정안전부령 기준)

분야 \ 기준부담률	0%	30%	50%	70%	100%	합계
교육	0(0)	0(0)	3(3)	0(0)	1(1)	4
농림해양수산	2(1)	6(7)	22(27)	1(1)	14(9)	45
문화관광	0(0)	0(0)	9(10)	0(0)	3(2)	12
보건복지	0(0)	0(1)	7(15)	1(1)	18(9)	26
산업·중소기업	0(0)	0(0)	3(4)	0(0)	1(0)	4
수송 및 교통	0(3)	0(0)	0(1)	0(0)	5(1)	5
일반행정 및 안전	0(0)	2(2)	2(2)	0(0)	1(1)	5
환경	1(1)	0(1)	9(8)	0(0)	0(0)	10
합계	3(5)	8(11)	55(70)	2(2)	43(23)	111

2) 이들 3개 사업은 도의 기준부담률이 30%, 50%, 100%로 설정되어 있다.

3) 이들 4개 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기준부담률이 50% 또는 100%로 설정되어 있다.

- 분야별 기준부담률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26개)와 문화관광(10개)의 순서로 나타남
 - 반면 교육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각각 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시·도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 69.2%(1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1.1%(14개)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환경 분야는 0.0%(0개)인 것으로 나타남

2.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기준부담률 현황

-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는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개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과 인천은 기준부담률 60% 이상인 사무가 각각 20.1%(20개)와 20.5%(7개)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충북, 전남, 경남은 기준부담률 60% 이상인 사무가 각각 3.6%(3개), 2.6%(2개), 0.0%(0개)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남과 경남은 기준부담률 100%인 사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은 96개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50% 사무가 29.5%(2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정액을 부담하는 사무가 24.2%(23개)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100% 사업도 10.5%(10개)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한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인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사무도 22.1%(21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은 34개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50% 사무가 52.9%(1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기준부담률이 30%, 60%, 100%인 사무가 각각 8.8%(3개)로 나타나고 있음
- 충북은 90개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30% 사무가 55.6%(5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정액을 부담하는 사무가 22.2%(20개)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40% 사무도 16.7%(15개)로 나타남
 - 기준부담률이 100%인 사무는 3.3%(3개)로 다소 낮은 수준임
- 전남은 78개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50% 사무가 44.9%(3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기준부담률 30% 사무가 17.9%(14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준부담률 100% 사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부담률 50% 이하의 구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경남은 63개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 50% 사무가 61.9%(3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기준부담률 30% 사무가 28.6%(18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준부담률 100% 사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시·도별 기준부담률 현황(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

(단위: 개, %)

구분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남
10%	0(0.0)	0(0.0)	0(0.0)	2(2.6)	0(0.0)
15%	0(0.0)	0(0.0)	0(0.0)	6(7.7)	0(0.0)
18%	0(0.0)	0(0.0)	0(0.0)	1(1.3)	0(0.0)
20%	0(0.0)	0(0.0)	0(0.0)	8(10.3)	5(7.9)
25%	0(0.0)	1(2.9)	0(0.0)	3(3.8)	0(0.0)
30%	2(2.1)	3(8.8)	50(55.6)	14(17.9)	18(28.6)
35%	0(0.0)	0(0.0)	0(0.0)	1(1.3)	0(0.0)
40%	0(0.0)	1(2.9)	15(16.7)	4(5.1)	0(0.0)
50%	28(29.5)	18(52.9)	1(1.1)	35(44.9)	39(61.9)
60%	1(1.1)	3(8.8)	0(0.0)	0(0.0)	0(0.0)
70%	4(4.2)	1(2.9)	0(0.0)	0(0.0)	0(0.0)
80%	2(2.1)	0(0.0)	0(0.0)	2(2.6)	0(0.0)
90%	3(3.2)	0(0.0)	0(0.0)	0(0.0)	0(0.0)
100%	10(10.5)	3(8.8)	3(3.3)	0(0.0)	0(0.0)
50~70%	1(1.1)	1(2.9)	0(0.0)	0(0.0)	0(0.0)
정액	23(24.2)	2(5.9)	20(22.2)	1(1.3)	0(0.0)
기타	21(22.1)	1(2.9)	1(1.1)	1(1.3)	1(1.6)
계	95(100.0)	34(100.0)	90(100.0)	78(100.0)	63(100.0)

제2절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분석

1.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

- 2016년 기준 839개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100%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등을 제외한 534개 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파악하였음
- 534개 국고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0.0조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비는 약 19.4조 원(32.2%)으로 나타났음
 - 지방비 중 시·도비는 약 9.1조 원으로 지방비 중에서 시·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나타났음
 - 시·군·구비는 약 10.3조 원(53.1%)으로 시·도보다 시·군·구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기준부담률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비 비중
0~10% 미만	46	960,749	495,107	465,642	11,132	454,511	2.4
10~20% 미만	46	4,048,520	2,508,624	1,539,896	249,197	1,290,699	16.2
20~30% 미만	83	7,154,228	4,117,961	3,036,267	746,302	2,289,966	24.6
30~40% 미만	76	14,483,045	10,377,822	4,105,224	1,418,388	2,686,836	34.6
40~50% 미만	73	6,393,803	4,063,483	2,330,320	1,049,564	1,280,755	45.0
50~60% 미만	43	2,766,631	2,084,126	682,505	367,892	314,613	53.9
60~70% 미만	31	13,689,992	9,553,048	4,136,944	2,533,390	1,603,555	61.2
70~80% 미만	25	795,951	488,507	307,444	232,274	75,170	75.6
80~90% 미만	25	6,811,069	5,159,606	1,651,463	1,376,194	275,269	83.3
90~100% 미만	16	355,011	181,316	173,695	167,324	6,371	96.3
100%	70	2,550,355	1,627,696	922,659	922,659	0	100.0
합계	534	60,009,355	40,657,297	19,352,058	9,074,315	10,277,744	46.9

- 534개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기준부담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도 기준부담률이 20-30% 미만인 사업이 83개(1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40% 미만 사업(76개, 14.2%)과 40-50% 미만 사업(73개, 13.7%)의 순서로 나타났음
 - 시·도 기준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324개로 분석대상의 6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도 기준부담률이 100%인 사업도 70개(13.1%)로 사업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도의 지방비 부담액은 약 0.9조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도 기준부담률 30-40% 미만인 사업에서의 시·군·구 지방비 부담액이 약 2.7조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30% 미만 사업(약 2.3조 원)과 60-70% 미만 사업(약 1.6조 원)의 순서로 나타났음
-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사업이 106개(1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69개, 12.9%)와 농림축산식품부(57개, 10.7%)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시·도비 비중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 수가 1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에 대한 시·도비 비중이 78.6%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사업 수가 1개인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중에서 농촌진흥청 사업에 대한 시·도비 비중이 12.9%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106개 사업, 약 4.2조 원)와 환경부(53개 사업, 약 1.7조 원) 사업은 시·도비 비중이 낮고, 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소관부처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비 비중
고용노동부	5	260,545	206,250	54,295	34,032	20,263	62.7
교육부	1	13,407	4,872	8,535	609	7,926	7.1
국가보훈처	1	19,790	4,000	15,790	1,830	13,960	11.6
국민안전처	13	1,391,095	704,475	686,621	166,832	519,789	24.3
국방부	1	3,000	1,500	1,500	0	1,500	0.0
국토교통부	47	5,327,868	3,376,073	1,951,795	1,426,550	525,246	73.1
기획재정부	4	221,897	122,695	99,202	47,271	51,931	47.7
농림축산식품부	57	3,411,239	2,211,470	1,199,769	284,215	915,554	23.7
농촌진흥청	17	312,749	155,411	157,338	20,250	137,088	12.9
문화재청	13	558,052	385,863	172,189	74,797	97,392	43.4
문화체육관광부	69	3,066,623	1,612,957	1,453,666	571,521	882,145	39.3
미래창조과학부	5	76,818	45,187	31,631	24,849	6,783	78.6
법무부	2	75,171	46,559	28,612	21,171	7,441	74.0
보건복지부	106	34,663,343	25,488,636	9,174,707	4,928,607	4,246,100	53.7
산림청	24	1,626,272	933,338	692,934	265,439	427,495	38.3
산업통상자원부	15	538,019	285,053	252,966	155,149	97,817	61.3
새만금개발청	1	6,976	3,401	3,575	950	2,625	26.6
식품의약품안전처	9	73,350	38,780	34,570	14,686	19,885	42.5
여성가족부	23	670,346	422,607	247,739	128,020	119,720	51.7
중소기업청	3	303,332	190,062	113,270	48,391	64,879	42.7
해양수산부	48	737,918	450,163	287,755	103,286	184,470	3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39,800	19,900	19,900	19,900	0	100.0
행정자치부	16	820,733	506,187	314,546	78,275	236,272	24.9
환경부	53	5,791,011	3,441,858	2,349,153	657,688	1,691,466	28.0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수는 일반회계 사업이 192개(3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별회계(144개, 30.0%)와 기금(118개, 22.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도비의 비중은 일반회계 사업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특회계 사업은 37.3%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액은 일반회계 사업이 약 4.7조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특회계(약 2.4조 원)와 특별회계(약 2.0조 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표 3-6>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회계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비 비중
일반회계	192	38,189,057	27,895,015	10,294,042	5,553,032	4,741,010	53.9
특별회계	144	7,879,421	4,531,857	3,347,564	1,326,263	2,021,302	39.6
지특회계	80	9,598,969	5,780,100	3,818,869	1,426,050	2,392,819	37.3
기금	118	4,341,907	2,450,324	1,891,583	768,970	1,122,613	40.7
합계	534	60,009,355	40,657,297	19,352,058	9,074,315	10,277,744	46.9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대응지방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비가 10-100억 원 미만인 사업이 216개(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1,000억 원 미만(171개, 32.0%)과 1-10억 원 미만(92개, 17.2%)의 순서로 나타났음
 - 지방비가 1-10억 원 미만인 사업의 시·도비 비중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1,000억 원 미만 사업(47.2%)과 1,000억 원 이상 사업(47.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지방비가 1억 원 미만인 사업의 시·도비 비중이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 사업 중 의료급여경상보조,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3개 사업은 대응지방비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대응지방비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비 비중
1억원 미만	14	2,618	1,818	800	278	522	34.7
1~10억원 미만	92	121,649	74,890	46,759	25,916	20,843	55.4
10~100억원 미만	216	2,669,326	1,748,676	920,650	403,624	517,026	43.8
100~1,000억원 미만	171	12,945,572	7,907,573	5,038,000	2,375,997	2,662,003	47.2
1,000억원 이상	41	44,270,189	30,924,340	13,345,849	6,268,500	7,077,350	47.0
합계	534	60,009,355	40,657,297	19,352,058	9,074,315	10,277,744	46.9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국고보조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율이 50-60% 미만인 사업이 230개(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0-50% 미만(78개, 14.6%)과 70-80% 미만(73개, 13.7%)의 순서로 나타났음
 - 사업 수가 2개 이상인 사업 중 국고보조율이 10-20% 미만인 사업의 시·도비 비중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국고보조율이 70-80% 미만인 사업이 73.2%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에 국고보조율이 20-30% 미만 사업의 시·도비 비중은 35.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사업 수가 가장 많은 국고보조율 50-60% 미만 사업의 경우 시·도비 비중이 43.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3-8>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국고보조율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비 비중
0~10% 미만	1	82,379	4,800	77,579	77,579	0	100.0
10~20% 미만	6	259,741	38,450	221,291	167,418	53,874	75.7
20~30% 미만	11	194,648	52,573	142,075	50,942	91,133	35.9
30~40% 미만	31	1,388,507	503,867	884,640	522,982	361,658	59.1
40~50% 미만	78	7,396,971	3,430,975	3,965,996	1,734,845	2,231,150	43.7
50~60% 미만	230	8,694,274	4,657,071	4,037,203	1,736,221	2,300,983	43.0
60~70% 미만	66	11,758,700	7,708,139	4,050,561	1,755,021	2,295,540	43.3
70~80% 미만	73	17,265,090	13,251,951	4,013,139	1,596,502	2,416,638	39.8
80~90% 미만	27	12,602,464	10,663,529	1,938,935	1,419,663	519,272	73.2
90% 이상	11	366,581	345,942	20,639	13,142	7,497	63.7
합계	534	60,009,355	40,657,297	19,352,058	9,074,315	10,277,744	46.9

○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사업 수는 전남이 40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394개)과 경북(390개)의 순서로 나타났음
- 반면 서울의 사업 수는 246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263개)과 울산(267개)의 순서로 나타났음
- 부산의 시·도비 비중이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81.1%)와 대구(79.0%)의 순서로 나타났음
- 반면 전남의 시·도비 비중이 24.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북(30.6%)과 충남(31.3%)의 순서로 나타났음
- 7개 특·광역시 평균 시·도비 비중은 79.3%로 높은 반면, 8개 도의 평균 시·도비 비중은 32.7%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7개 특·광역시의 대응지방비는 약 5.9조 원이며, 이 중에서 시·군·구비는 약 1.2조 원(20.7%)인 것으로 나타났음

- 8개 도의 대응지방비는 약 13.5조 원이며, 이 중에서 시·군·구비는 약 9.1조 원(67.3%)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치구 보다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9>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자원분담 현황(시·도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비 비중
서울	246	5,327,552	3,720,847	1,606,706	1,254,078	352,628	78.1
부산	325	4,167,097	2,837,524	1,329,573	1,145,314	184,259	86.1
대구	276	2,596,989	1,849,498	747,491	590,726	156,766	79.0
인천	321	2,780,890	1,994,110	786,781	560,590	226,190	71.3
광주	271	1,725,509	1,184,835	540,674	438,236	102,438	81.1
대전	263	1,491,291	1,011,983	479,308	378,404	100,904	78.9
울산	267	1,116,889	707,217	409,672	310,329	99,342	75.8
경기	374	10,089,649	6,818,324	3,271,326	1,159,240	2,112,086	35.4
강원	384	3,897,114	2,638,760	1,258,355	449,027	809,328	35.7
충북	354	2,801,617	1,806,857	994,760	321,056	673,704	32.3
충남	384	3,799,850	2,479,084	1,320,766	413,997	906,769	31.3
전북	394	4,061,380	2,714,022	1,347,358	412,480	934,878	30.6
전남	404	5,124,529	3,422,966	1,701,563	418,010	1,283,553	24.6
경북	390	5,673,682	3,807,956	1,865,725	640,330	1,225,396	34.3
경남	386	5,131,280	3,439,279	1,692,001	582,498	1,109,504	34.4

2. 기준부담률 규정과 실제 부담률간 차이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1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부담률과 시·도의 실제 부담률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음

가. 기준부담률별 현황

1) 기준부담률 30% 사업

-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30%인 사업은 6개로 나타났음
-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1개 사업(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준부담률 30% 사업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5개 사업 중 1개 사업(20.0%)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기준부담률 30%)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30	-	-	-	-	-	-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30	-	-	-	-	-	21.1
산림병해충 방제	30	30	-	-	-	-	30	32.9
산불방지 대책	30	30	-	-	-	30	30	32.3
조림	30	30	-	-	-	-	-	31.3-75.7
육림	30	30	-	-	-	-	50	31.3

2) 기준부담률 50% 사업

-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50%인 사업은 51개로 나타났음
- 51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높은 반면, 15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기준부담률 50%)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	-	-	-	-	-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	-	(정액)	-	30	26.4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정액	-	30(20)	-	-	-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	-	(정액)	-	-	0.0-100.0
작은도서관 도서관구입 지원	50	50	30	50	-	-	-	-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50	50	-	-	-	-	-	100.0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	-	(정액)	50	-	27.2-50.0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차등	-	-	-	-	14.1-16.6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차등	-	-	-	30	26.3-100.0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	-	-	50	20	-
전통사찰 정비	50	50	-	-	-	-	-	31.8-77.4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	-	-	-	-	47.5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	-	(정액)	-	-	48.3
밭기반 정비	50	50	-	-	-	-	-	19.4-27.9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	-	-	-	50	23.5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	-	-	-	50	30.0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	-	-	-	-	-
토양개량 사업	50	50	-	-	-	-	-	-
대구획경지 재정리	50	50	-	-	-	-	-	-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	-	30(20)	-	-	29.1-30.0
지역특화 사업	50	50	-	-	30(20)	-	50	1.8-100.0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	-	-	-	-	0.0-27.1
축산물 검사	50	50	-	-	-	-	-	23.7-100.0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	-	30(20)	-	30	29.3-50.0
석탄비축	50	50	-	-	-	-	-	-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100	-	-	-	-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	-	-	-	-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	-	-	-	-	30.7-42.2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	-	-	-	-	31.1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	-	-	-	-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	-	-	-	-	-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	-	-	-	-	-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	-	-	-	50	12.5-100.0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	-	-	-	-	-
모자보건 관리	50	50	-	-	-	-	-	40.4-41.9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정액	-	-	-	-	45.9-75.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	-	-	-	-	63.6-72.3
오염해역 준설	50	50	-	-	-	-	-	-
어촌종합개발	50	50	-	-	-	-	-	16.1-49.0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	-	-	-	-	-
종묘 매입·방류	50	50	-	-	-	-	-	11.3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	-	-	-	-	38.3-47.2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	50	30(20)	-	-	-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	-	30(20)	-	-	25.0-81.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	-	-	20	-	-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	-	-	-	-	-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	30	-	15	-	-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	-	-	-	-	97.9
생계급여(차등보조)	50	50	-	-	-	-	-	60.2
주거급여(차등보조)	50	50	-	-	-	-	-	59.1
영유아보육사업(차등보조)	50	50	50	-	40(30)	-	-	48.3-89.5

- 한편 12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부담률 50% 사업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31개 사업 중 15개 사업(48.4%)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기준부담률 70% 사업

-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70%인 사업은 1개로 나타났음
- 사방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68.6%로 기준부담률과 유사하게 나타남

<표 3-12>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기준부담률 70%)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사방	70	70	-	-	-	-	-	68.6

4) 기준부담률 100% 사업

-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100%인 사업은 22개로 나타났음
- 22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기준부담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9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6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부담률 100% 사업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17개 사업 중 9개 사업(52.9%)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기준부담률 100%)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100	-	-	-	-	-	-
공립박물관 건립	100	100	-	-	-	-	-	-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100	-	-	30(20)	-	-	27.4-100.0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100	-	-	-	-	-	48.3
한센장애인 보호	100	100	-	-	-	-	-	50.0-93.7
급성전염병 관리	100	100	-	-	-	-	-	45.0-100.0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100	-	-	-	-	-	32.5-44.6
부랑인보호	100	100	100	-	-	-	-	97.3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100	50	50	-	50	50	10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100	50	-	-	-	50	45.4-66.7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100	-	-	-	-	-	47.7-100.0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100	-	-	-	-	-	28.1-100.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100	-	-	-	-	50	82.6-100.0
인공어초시설	100	100	-	-	-	-	-	-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100	-	-	-	-	-	0.0
2중 어항 건설	100	100	-	-	-	80	50	-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100	-	-	-	-	-	32.8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100	-	-	-	-	-	-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100	100	-	-	-	-	-	100.0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100	-	-	-	-	-	27.7-69.7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100	-	-	-	-	-	41.8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100	-	-	40(30)	-	-	0.0-100.0

나. 분야별 현황

1) 교육 분야

- 교육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50%인 사업이 3개, 100%인 사업이 1개로 나타남
- 교육 분야의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교육 분야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1개 사업(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은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교육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청주)	전남	경남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100	-	-	-	-	-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50	50	30	50	-	-	-	-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차등	-	-	-	-	14.1-16.6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	-	-	50	20	-

2) 농림해양수산 분야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30%인 사업이 5개, 50%인 사업이 22개, 70%인 사업이 1개, 100%인 사업이 8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9개로 나타남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45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2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기준부담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15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6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28개 사업 중 15개 사업(53.6%)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농림해양수산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밭기반 정비	50	50	-	-	-	-	-	19.4-27.9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	-	-	-	50	23.5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	-	-	-	50	30.0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	-	-	-	-	-
토양개량 사업	50	50	-	-	-	-	-	-
대구획경지 재정리	50	50	-	-	-	-	-	-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	-	30(20)	-	-	29.1-30.0
지역특화 사업	50	50	-	-	30(20)	-	50	1.8-100.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	-	-	-	-	0.0-27.1
축산물 검사	50	50	-	-	-	-	-	23.7-100.0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	-	30(20)	-	30	29.3-50.0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	-	-	-	-	63.6-72.3
인공어초시설	100	100	-	-	-	-	-	-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100	-	-	-	-	-	0.0
시·도 지도선 건조	0	100	-	-	-	-	-	-
2중 어항 건설	100	100	-	-	-	80	50	-
어장 정화	0	30	-	-	-	-	-	-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100	-	-	-	-	-	32.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50	-	-	-	-	-	43.4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100	-	-	-	-	-	-
오염해역 준설	50	50	-	-	-	-	-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어촌종합개발	50	50	-	-	-	-	-	16.1-49.0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100	100	-	-	-	-	-	100.0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50	-	-	-	-	-	20.2-41.5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	-	-	-	-	-
종묘 매입·방류	50	50	-	-	-	-	-	11.3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100	-	-	-	-	-	27.7-69.7
어선정화조 건조	100	50	-	-	-	-	-	-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30	-	-	-	-	-	21.1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30	-	-	-	-	-	1.5-60.0
산림병해충 방제	30	30	-	-	-	-	30	32.9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	-	-	-	-	-
영림계획	100	50	-	-	-	-	-	-
산불방지 대책	30	30	-	-	-	30	30	32.3
조림	30	30	-	-	30(20)	-	-	31.3-75.7
육림	30	30	-	-	-	-	50	31.3
사방	70	70	-	-	-	-	-	68.6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	-	-	-	-	38.3-47.2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100	-	-	-	-	-	41.8
임도건설	30	50	-	-	-	-	-	30.4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	50	30(20)	-	-	-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	-	30(20)	-	-	25.0-81.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	-	-	20	-	-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	-	-	-	-	-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	30	-	15	-	-

3) 문화관광 분야

-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50%인 사업이 9개, 100%인 사업이 2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1개로 나타남

<표 3-16>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문화관광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	-	정액	-	30	26.4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정액	-	30(20)	-	-	-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	-	정액	-	-	0-100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50	50	-	-	-	-	-	100.0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	-	정액	50	-	27.2-50.0
공립박물관 건립	100	100	-	-	-	-	-	-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차등	-	-	-	30	26.3-100.0
전통사찰 정비	50	50	-	-	-	-	-	31.8-77.4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	-	-	-	-	47.5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100	-	-	30(20)	-	-	27.4-100.0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	-	정액	-	-	48.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50	100	60	-	50	50	34.8-90.3

- 문화관광 분야의 12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기준부담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3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6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10개 사업 중 3개 사업(30.0%)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4) 보건복지 분야

-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50%인 사업이 6개, 100%인 사업이 9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11개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의 26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24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기준부담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9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1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24개 사업 중 9개 사업(37.5%)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7>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보건복지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청주)	전남	경남	
모자보건 관리	50	50	-	-	-	-	-	40.4-41.9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100	-	-	-	-	-	48.3
한센장애인 보호	100	100	-	-	-	-	-	50.0-93.7
급성전염병 관리	100	100	-	-	-	-	-	45.0-100.0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100	-	-	-	-	-	32.5-44.6
의료보호	100	7~80	-	50	-	-	50	26.5-40.5
부랑인보호	100	100	100	-	-	-	-	97.3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100	50	50	-	50	50	10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100	50	-	-	-	50	45.4-66.7
생계급여	50	50	-	-	-	-	-	60.2
주거급여	50	50	-	-	-	-	-	59.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50	-	50	-	50	50	77.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100	-	-	-	-	-	47.7-100.0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50	-	-	-	-	-	23.9-100.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50	차등	-	30	-	-	46.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30	80	50	-	-	50	42.9-47.6
경로연금	70	50	-	-	-	-	-	35.0
병원선 운영	100	50	-	-	-	-	-	-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50	-	-	-	-	50	-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100	-	-	-	-	-	28.1-10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50	-	-	-	50	-	87.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50	-	-	-	-	-	80.8
영유아보육사업(차등보조)	50	50	50	-	40	-	-	48.3-89.5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정액	-	-	-	-	45.9-75.4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50	-	-	-	50	-	72.7-84.1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	-	-	-	-	97.9

5) 산업중소기업 분야

-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50%인 사업이 3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1개로 나타남
-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4개 사업 모두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표 3-18>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산업중소기업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석탄비축	50	50	-	-	-	-	-	-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100	-	-	-	-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	-	-	-	-	-
고용촉진 훈련	100	50	-	-	-	-	-	-

6) 수송 및 교통 분야

-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100%인 사업이 1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4개로 나타남
- 수송 및 교통 분야의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3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9>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수송 및 교통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100	-	-	-	-	50	82.6-100.0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00	50	-	-	-	-	-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	-	-	-	-	0.0-100.0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	-	-	-	-	-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	-	-	-	-	0.0-100.0

7)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

-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30%인 사업이 1개, 50%인 사업이 1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3개로 나타남
-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의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2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	-	-	-	-	-
도서종합개발	30	50	-	50	-	50	-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30	-	-	-	-	-	-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30	-	-	40	-	-	38.6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100	-	-	40	-	-	0.0-100.0

8) 환경 분야

- 환경 분야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모두 50%인 사업이 7개, 특광역시와 도의 기준부담률이 다른 기타 사업이 3개로 나타남
- 환경 분야의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기준부담률보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사업의 실제 부담률은 기준부담률을 포함하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의 경우 실제 부담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 (75.0%)이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기준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차이(환경 분야)

(단위: %)

사업명	행정안전부령		조례					실제 부담률
	특광역시	도	서울	인천	충북 (청주)	전남	경남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	-	-	-	-	30.7-42.2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50	-	-	-	-	-	17.8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	-	-	-	-	31.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30	-	-	-	-	-	-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	-	-	-	-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	-	-	-	-	-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	-	-	-	-	-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	-	-	-	50	12.5-100.0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	-	-	-	-	-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0	-	-	-	-	-	-



제 4 장

주요 국가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제1절 일본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제2절 프랑스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KRILA

제 4 장

주요 국가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제1절 일본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1.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2조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역할은 동법 제1조의2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로서 존립에 관련된 사무, ②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 활동 혹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준칙에 관한 사무, ③ 전국적 규모 혹은 전국적 시점에서 행해야 하는 시책 및 사업의 실시, ④ 기타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함
-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은 동법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역할: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기본으로 지역 행정을 자주적, 종합적으로 실시함
 - 사무: 지역 사무 및 기타 사무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처리함
- 지방공공단체 중 광역(도도부현)의 역할은 동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 ① 광역에 걸친 것(광역사무), ② 시정촌에 관한 연락조정 관련된 것(연락조정사무), ③ 사무의 규모 또는 성질이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보완사무)을 처리함
- 지방공공단체 중 기초(시정촌)의 역할은 동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공공단체 사무 중 광역이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함
 - 단, 광역이 처리하는 사무 중 ‘보완사무’에 관해 시정촌은 당해 시정촌의 규모 및 능력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음

<그림 4-1>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주요 역할분담

	(보건위생)	(복지)	(교육)	(환경)	(마을만들기)	(치안·안전·방재)	
도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취급자(일부)의 면허 · 정신과병원 설치 · 임시예방접종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 개호지원전문원 등록 · 신채장애자 경성상당소 · 지적장애자 경성상당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급편제기준, 교직원 정수 결정 · 사립학교, 시장촌립 고등학교 설치인가 · 高等学校の設置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프론트류 회수업자 등록 · 공해건강피해 보상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획 지정 · 시가지개발사업 인가 · 지정구간 1급하천, 2급하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핵시·특례시가 처리하지 않는 사무 · 지정도시가 처리하지 않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범죄조사, 운전면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자 입원 조치 · 동물취급업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당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비부담 교직원 일면 급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중 지하수의 재집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구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 지정구간의 국도, 현도 관리 · 지정구간의 1급하천 (일부), 2급하천 (일부) 관리 		
시정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설치 · 음식점 영업등 허가 · 운전 이용허가 · 여관업·공중욕장 경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소·양호노인홀 설치 인가, 감독 · 개호서비스 사업자 지정 · 신채장애자수업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비부담 교직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 매립발생시설 설치 신청서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조정에 따른 설치제한 · 부대서비스 고려자대상 주택사업 등록 		
특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분진발생시설 설치신청서 수리 · 우수 또는 폐역을 배출 하는 특정시설 설치 신청서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화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인가 		
시정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 보건센터 설치 · 건강증진사업 실시 · 경기 예방접종 실시 · 결핵관련 건강진단 · 매장, 화장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소 설치·운영 · 생활보호 (시 및 복지사무소 설치한 정원이 처리) · 양호노인홀 설치·운영 · 장애자자립지원금부 · 개호보험사업 · 국민건강보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설치관리 · 유치원 설치·운영 감독, 근무성적 평정 · 현비부담 교직원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폐기물 수집과 처리 · 소음·진동·악취를 규제하는 지역 지정·규제기준 설정 (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정비·관리 · 도시계획결정 (상하수도 등 관계) · 도시계획결정 (상하수도 등 이외) · 시장촌제, 교량의 건설·관리 · 준용하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구급활동 · 화재예방·경계·방제 등 · 호적, 주민기본대장 	

자료: 오사카시 홈페이지, “地方公共団体の主な役割分担の現状” (2012年 4月)

2. 국고지출금의 의의

가. 국고지출금의 개념

-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특정사무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교부되는 돈을 총칭하여 국고지출금이라고 함
 - 국고부담금: 국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부담구분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부담함(장애자개호급부비, 갱생의료급부비, 아동수당, 아동운영비 등)
 - 국고보조금: 국가가 원조하여 교부함(초중학교증개축사업 보조금, 교사내진강화사업 보조금 등)

- 국고위탁금: 국가 위탁사무로 경비전액을 부담함(국민연금사무비 국고위탁금, 통계·조사 등 위탁금 등)

나. 삼위일체개혁에 따른 국고지출금의 변화

-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국고부담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었음
 - 장려적 국고보조 원칙하에 국고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슬림화를 추진하였음
 - 삼위일체개혁(2004~2006)을 통해 4.7조 엔의 국고지출금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3조 엔의 세원이양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표 4-1>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국고지출금 개혁

구분	개혁 내용	개요
내각부	10억엔 정도	생활정보체제정비 교부금, 교통사고상당소 교부금, 민간자본활용사업조사비 보조금 등
총무성	90억엔 정도	소방방재설비정비비 보조금(긴급소방원조대관계설비분 제외), 지역정보통신네트워크기반정비사업비 보조금, 정보통신시스템정비촉진비 보조금 등
문부과학성	의무교육분 국고부담금 8,500억엔 정도	감액상당분은 세원이양예정 특례교부금으로 조치
	기타 국고보조부담금 등 230억엔 정도	요보호급및準요보호아동학생원조비 보조금, 교원연수사업비 보조금, 고등학교 장학사업비 보조금, 학교교육설비정비비 보조금 등
후생노동성	9340억엔 정도	국민건강보호 국고부담, 양로노인홈 보호비 부담금, 아동보호비 보조금(산후대체보육사 보조금 등), 재택복지사업비 보조금(생활지원하우스 등), 사회복지시설시설정비비 보조금·부담금 등
농림수산성	3040억엔 정도	경영체육성기반정비사업비 보조, 치산사업비 보조, 농도정비사업비 보조, 수토보전립정비 치산사업비 보조, 협동농업보급사업 교부금, 농업위원회 교부금 등

구분	개혁 내용	개요
경제산업성	180억엔 정도	소규모기업활성화 보조금, 중심시가지상업활성화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산업재배치촉진환경정비비 보조금, 수입관련사업자집적촉진사업비 보조금 등
국토교통성	6,460억엔 정도	공영주택집세대책보조, 주택산업구조개혁추진 보조금, 토지이용전환계획책정 보조금, 토지분류조사비 보조금, 특정임대주택건설용자이자보급보조 등
환경성	530억엔 정도	환경감시조사 보조금, 조수보호사업비 보조금, 폐기물처리시설정비 보조금 등
합계	23,380억엔 정도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자료:鈴木·橋本(2015) '国庫支出金の構造変化について'

<표 4-2> 국고지출금 개혁의 경과 및 주요 내용

시기	관련 계획	주요 내용
2001	4 고이즈미(小泉)내각 발족	“성역없는 구조개혁”
	6 골격방침2001(骨太の方針2001)	지방자립, 활성화프로그램(시정촌합병, 국고보조금부담금 정리합리화 등)
2002	5 카타야마(片山) 시안 ‘지방재정구조와 세원이양에 관하여’	세원이양으로 세수를 국가:지방=1:1 실현 국고지출금 5.5조엔 삭감, 교부세 재검토
	6 골격방침 2002	지방의 자원부족(14조엔) 조기해소 목표
	10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의견서	국고보조부담사업 형태 검토 + 국고보조부담금 형태에 관해 언급
2003	6 골격방침 2003	삼위일체개혁 기본방침 제출(2006년까지의 공정표 제시)
	12 2004년 지방재정계획	교부세 1.2조엔 감액, 소득양여세 4200억엔
2004	4 아소(麻生)플랜	2005년도 이후의 삼위일체개혁 진행방법
	5 지방6단체 긴급결의	아소플랜에 반발,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안(삼위일체개혁에 대한 전제 제시)

시기	관련 계획	주요 내용	
	6	골격방침 2004	2005년~2006년에 국고보조금개혁 3조엔 공정표, 지방에 개혁구체안 정리 요청, 세원이양에 개인주민세 플랫폼 검토
	8	지방6단체 개혁안	2기에 나눠 3.2조엔, 3.6조엔의 보조금삭감, 세원이양안 제시
	11	삼위일체개혁에 관하여	정부여당합의(6천억엔 보조금개혁은 미정)
2005	4	아소대신이 도지사회장에게 요청	미결정분 6천억엔의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제시를 지방에 요청
	6	골격방침 2005	정부여당합의 답습
	7	도지사회 개혁안	6천억엔 개혁을 위해 1조엔 개혁리스트 제시
	11	추가개혁안	정부여당합의, 3조엔 세원이양내용이 결정
2007	4	삼위일체개혁 완료	국가에서 지방에 세원이양 완료
2009	4	아소내각 경제대책	리먼쇼크 경제대책(지방에 대한 배려)
	9	민주당 ‘매니페스토 2009’	조건부 보조금의 일괄교부금화, 지역주권
2011	4	2011년도 예산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창설
2013	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자료: 鈴木·橋本 (2015) ' 国庫支出金の構造変化について '

3. 광역-기초간 자원분담의 개요

- 2015년 결산기준 일본의 국고지출금 결산액은 15조 2,822억 엔임
 - 세입총액 대비 15.0% 수준이며, 2014년과 비교하여 1.5% 감소하였음
- 생활보호비 부담금이 1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10.4%),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10.3%), 의무교육비 부담금(10.0%), 아동수당교부금(9.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상위 5개 사업의 합계가 국고지출금 총액의 58.2%를 차지함
- 주요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 광역: 의무교육비부담금(24.2%), 보통건설사업비지출금(15.8%),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13.8%)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 생활보호비부담금(29.8%), 아동수당교부금(15.5%), 장애인자립지원금부비 부담금(11.8%)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표 4-3>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2015년 기준)

(단위: 백만엔, %)

구분	2015년도					
	광역(도도부현)		기초(시정촌)		순계액	
의무교육비 부담금	1,525,955	24.2	-	-	1,525,955	10.0
생활보호비 부담금	142,246	2.3	2,672,991	29.8	2,815,237	18.4
아동보호비 부담금	99,432	1.6	680,961	7.6	780,393	5.1
장애인자립지원금부비 부담금	71,002	1.1	1,059,752	11.8	1,130,754	7.4
사립고등학교경상비 조성비 보조금	107,393	1.7	-	-	107,393	0.7
아동수당 교부금	-	-	1,396,323	15.5	1,396,323	9.1
공립고등학교수업료 불징수 교부금	71,609	1.1	4,611	0.1	76,220	0.5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교부금	269,892	4.3	-	-	269,892	1.8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995,921	15.8	579,181	6.4	1,575,101	10.3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371,567	5.9	103,149	1.1	474,716	3.1
실업대책사업비 지출금	-	-	5	0.0	5	0.0

구분	2015년도					
	광역(도도부현)		기초(시정촌)		순계액	
위탁금	133,822	2.1	97,736	1.1	231,558	1.5
보통건설사업	6,344	0.1	4,435	0.0	10,779	0.1
재해복구사업	224	0.0	2,402	0.0	2,627	0.0
기타	127,254	2.0	90,899	1.1	218,152	1.4
재정보급금	2,815	0.0	4,203	0.0	7,017	0.0
국유제공시설소재 시정촌조성교부금	30	0.0	34,510	0.4	34,540	0.2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35,254	0.6	25,688	0.3	60,942	0.4
전원지역대책교부금	104,925	1.7	31,893	0.4	136,819	0.9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 조정교부금	—	—	20,359	0.2	20,359	0.1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5,175	0.1	—	—	5,175	0.0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868,566	13.8	716,071	8.0	1,584,637	10.4
지역활성화·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109,848	1.7	196,073	2.0	305,921	2.0
지역활력 임시교부금
노력하는 지역 교부금
동일본대지진 부흥교부금	38,127	0.6	267,422	3.0	305,549	2.0
기타	1,346,067	21.4	1,091,581	12.1	2,437,649	16.1
합계	6,299,646	100	8,982,509	100	15,282,155	100

자료: 총무성, 「2017년판 지방재정백서」

○ 광역이 기초에 교부하는 광역지출금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광역이 단독적 시책 등을 위해 기초에 교부하는 것(‘광역비에서 지출’)이 있음
- 광역이 국고보조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기초에 교부하는 것(‘국고
재원 수반’)이 있음⁴⁾

4) 국고지출금으로 광역지자체 예산에 계상되어 교부되거나 또는 국고지출금에 더해 국가의 법령규정에 근거한 광역지자체의 보조부담분으로 교부됨

<표 4-4> 광역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2015년 기준)

(단위: 백만엔 %)

구분	2015년도 결산액	
국고재원을 수반	2,540,494	64.4
아동보호비 부담금	288,354	7.3
장애인자립지원금부비 부담금	501,316	12.7
아동수당 교부금	297,235	7.5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305,885	7.8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70,303	1.8
위탁금	67,653	1.7
보통건설사업	7,526	0.2
재해복구사업	224	0.0
기타	59,903	1.5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23,211	0.6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교부금	4,755	0.1
기타	981,782	24.9
광역비에서 지출	1,404,699	35.6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167,013	4.2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1,601	0.0
기타	1,236,085	31.4
합계	3,945,193	100.0

자료: 총무성, 「2017년판 지방재정백서」

4.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사례: 야마나시(山梨)현

가. 2017년 국고지출금 사업의 개요

- 일본 야마나시현은 면적 4,465km², 인구 약 85만 명(2016.1 기준) 규모의 광역자치체로 현청소재지인 코후(甲府)시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기초자치체로 구성되어 있음
 - 지정도시, 중핵시 등이 없이 시정촌으로만 구성됨
- 일본의 47개 광역(도도부현) 중 GRDP 및 재정력지수 측면에서 평균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야마나시현을 대상으로 사례를 검토하였음
 - GRDP는 3.12조 엔(1인당 375.75만 엔)으로 47개 광역 중 23위임(2016년 기준)⁵⁾
 - 재정규모는 세입총액 447,817백만 엔, 재정력지수⁶⁾는 0.396로 D그룹⁷⁾에 속함(전국평균 0.505, 47개 광역 중 전국 31위 수준임)
-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 사업 총 311개에서 각 사업별 광역의 부담비중은 다음과 같음
 - 국고지출금 중 광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초에 교부되는 직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대부분 0%를 부담함
 - 국고지출금 중 광역을 거쳐 기초에 교부되거나 국고지출금에 광역의 보조 부담분을 더해 광역예산에 계상하여 기초에 교부하는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25%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직접사업+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25%, 33%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국고지출금을 수반하지 않거나, 국고지출금을 수반하더라도 법령으로 정한 국가보조 부담분 이상을 교부하는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50%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5)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 国民經濟計算 ' (<http://www.esri.cao.go.jp/jp/sna/menu.html>).

6)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제한 수치의 과거 3년간 평균치이다.

7) 광역(도도부현)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한다. 1을 넘으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0.4 미만이면 과소단체 요건 중 하나로 들어간다(A그룹 : 1.00 이상, B그룹 : 0.500~1.00 미만, C그룹 : 0.400~0.500미만, D그룹 : 0.300~0.400미만, E그룹 : 0.300미만).

<표 4-5>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기준부담률별)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128	0	27	1	156
1/2	2	0	4	35	41
1/3	2	6	8	6	22
2/3	1	0	0	1	2
1/4	14	4	19	7	44
3/4	0	0	0	3	3
1/5	0	0	1	0	1
1/6	0	0	1	2	3
4/9	0	0	2	0	2
1/10	0	0	1	1	2
1.75/10	0	1	0	0	1
2.5/10	0	0	1	0	1
10/10	0	0	0	13	13
4/45	0	1	0	0	1
6/90	0	0	0	2	2
15/90	0	0	0	1	1
20/90	0	0	0	2	2
0.5/100	0	0	8	0	8
12.5/100	0	2	0	1	3
27.5/100	0	0	1	0	1
30/100	0	0	0	1	1
40/100	0	0	1	0	1
합계	147	14	74	76	311

나. 소관부처별·기준부담율별 현황

- 사회보장국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5%와 5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직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0%,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직접+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33%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표 4-6>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사회보건국)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24	0	6	1	31
1/2	1	0	4	16	21
1/3	1	5	4	2	12
2/3	0	0	0	1	1
1/4	14	3	8	2	27
3/4	0	0	0	2	2
4/9	0	0	1	0	1
4/45	0	1	0	0	1
6/90	0	0	0	2	2
15/90	0	0	0	1	1
20/90	0	0	0	2	2
12.5/100	0	2	0	0	2
10/10	0	0	0	2	2
합계	40	11	23	31	105

- 삼림환경국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와 5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직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모두 0%를 부담하고 있음
 -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0%, 0.5%를 부담하는 사업이 많음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표 4-7>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삼림환경국)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7	0	6	0	13
1/2	0	0	0	5	5
1/3	0	0	0	1	1
2/3	0	0	0	0	0
1/4	0	0	3	0	3
3/4	0	0	0	1	1
1/10	0	0	1	0	1
10/10	0	0	0	2	2
0.5/100	0	0	6	0	6
27.5/100	0	0	1	0	1
합계	7	0	17	9	33

- 산업노동국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5%와 5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표 4-8>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산업노동국)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1	0	16	0	17
1/2	0	0	0	7	7
1/3	0	0	0	3	3
1/4	0	0	7	0	7
1/6	0	0	0	1	1
0.5/100	0	0	2	0	2
12.5/100	0	0	0	1	1
30/100	0	0	0	1	1
40/100	0	0	1	0	1
합계	1	0	26	13	40

- 현토정비국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5%와 3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직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대부분 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33%, 25%, 17% 등 다양한 부담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직접+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33%, 17.5%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표 4-9>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현토정비국)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35	0	0	0	35
1/2	0	0	0	1	1
1/3	1	1	1	0	3
1/4	0	0	1	3	4
1/6	0	0	1	1	2
1.75/10	0	1	0	0	1
2.5/10	0	0	1	0	1
10/10	0	0	0	1	1
합계	36	2	4	6	48

- 종합정책국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센서스, 각종 조사를 행하는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0%를 부담함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50%, 25%를 부담함

<표 4-10>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종합정책국)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0	0	14	0	14
1/2	0	0	0	1	1
1/4	0	0	0	2	2
합계	0	0	14	3	17

- 리니어교통국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0%를 부담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모두 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10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표 4-11>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리니어교통국)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16	0	0	0	16
1/2	0	0	0	3	3
1/5	0	0	1	0	1
10/10	0	0	0	8	8
합계	16	0	1	11	28

- 교육위원회 사업에서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대부분의 사업인 직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간접사업의 경우 광역은 33%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단독사업의 경우 광역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표 4-12> 국고지출금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현황(교육위원회)

(단위: 개)

부담비율	직접	직접+단독	간접	단독	합계
0	45	0	1	0	45
1/2	1	0	0	2	3
1/3	0	0	3	0	3
2/3	1	0	0	0	1
1/4	0	1	0	0	1
3/4	0	0	0	0	0
4/9	0	0	1	0	1
1/10	0	0	0	1	1
합계	47	2	5	1	55

제2절 프랑스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1.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가. 개요

- 프랑스의 기본적인 지방행정체계는 레지옹(région, 광역자치단체), 데парта망(département, 광역과 기초의 중간), 코뮌(commune,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됨
 - 2016년 기준 프랑스의 레지옹은 18개(본토 13개, 해외령 5개), 데парта망은 101개(본토 96개, 해외 5개), 코뮌은 35,971개(본토 35,756개, 해외령 215개)임
- 프랑스 지방행정체계는 코뮌간 연합체(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EPCI는 여러 개의 코뮌을 재편한 행정적 구조로 자신들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함
 - EPCI는 고유 재원을 가지는 경우와 고유 재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됨

<표 4-13>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2016년 기준)

구분	레지옹(région)	데парта망(département)	코뮌(commune)
구성	프랑스 본토 13개, 해외 프랑스령 5개 등 총 18개	프랑스 본토 96개, 해외 프랑스령 5개 등 총 101개	프랑스 본토 35,756개, 해외 프랑스령 215개 등 총 35,971개
권한	지역개발과 정비, 직업교육, 고등학교 관리, 도시 주거 밀집지역 이외의 교통 관리 등	사회복지, 모성 및 육아 보호서비스, 데парта망 소관 도로, 항만, 소규모 비행장 등 관리, 중학교 관리, 소방 및 홍수 업무 등	코뮌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 보편적 권한, 운전면허발급, 건축허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관광사무소 등

-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유행정(libre administration)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자유행정의 원칙은 1946년의 헌법 제87조에 규정되었으며, 2003년의 헌법 개정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자유행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을 확대하였음
 - 2003년 3월 ‘공화국의 분권조직에 대한 헌법개정안(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relatif à l'organisation décentralisée de la République)’이 통과되었음
 - 2003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의 분권화된 지방행정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됨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험(experimentation) 원리와 보충성(complementarity) 원리를 도입하였음
-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제12장 제72조에서 제75-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뮌·데парта트망·레지옹·특별지방자치단체·해외령 등으로 구성되며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함(제7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음(제72-1조)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제7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든 권한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해야 함(제72-1조)

- ‘공화국 국토의 새로운 조직화에 대한 2015년 8월 7일 법(Loi du 7 août 2015 portant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portant, NOTRe)’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지방행정체계 내의 행정사무의 중복을 제거하면서 사무권한을 획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방행정계층 간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이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레지옹의 기능을 강화하고 데빠르트망은 사회적 연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구분하였음
 - 데빠르트망 : 예방,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 사회적 발전,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연대에 집중하고, 정책수단을 가지지 못한(정비, 주거 등) 기술적 영역에서 꼬뮌과 꼬뮌협의체를 지원함
 - 레지옹 : 경제발전, 혁신 및 국제화에 관한 레지옹 계획 수립, 경제협력, 경쟁력거점 강화, 항만과 공항, 인프라스트럭처와 고용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2014년부터 EU기금의 관리당국이 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직업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등 역할이 강화되었음
- 둘째, 꼬뮌 간의 통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음
 - 2010년 12월 16일의 ‘지방자치단체 개혁법’에 의해 꼬뮌의 새로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키폐뮌(communes nouvelles)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2015년이나 2016년에 통합하는 꼬뮌에 대해 국가 교부금이 3년 동안 보장되는 재정협약을 규정하였음
- 셋째, 꼬뮌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 2014년 1월 1일 이후 36,700개의 꼬뮌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음
 - 물, 쓰레기, 교통수단, 수영장 또는 도서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 경제, 도시 정비 또는 도시계획 등과 같은 하나 또는 다수의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였음
 - 꼬뮌협의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구 기준을 20,000명에서 5,000~20,000명으로

로 규정하여 꼬뮌협의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였음

- 꼬뮌협의체의 권한을 관광, 여행객 안내지역, 공공서비스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전

-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국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원은 자유행정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프랑스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이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전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지방세 감면 및 부처에 의한 특정지원금, 조세 이전 등의 3부문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재정지표(재정잠재력, 조세잠재력, 조세노력, 조세통합계수 등)와 부담지표(인구, 공공수혜자 수, 1인당 소득 등)를 기준으로 배분됨
 -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요 재정지원은 국가 재정지원 53%, 조세 이전 33%, 지방세 감면에 대한 보상 12%, 부처 보조금 2% 등으로 구성됨
 - 부처 보조금의 경우 개별 사업마다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함
- 2012년과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경상교부금(DGF) 등 다양한 교부금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소득에 대한 과세(prélèvements sur recettes, PSR)’, 국가예산의 미션(mission)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RCT)’⁸⁾, 예산, 각종 이전 조세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포함함

8) 프랑스의 프로그래밍 예산 편성방식은 미션-프로그램-액션의 순으로 예산이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미션은 119(지자체 및 지자체 그룹에 대한 재정지원), 120(데파르트

-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은 100,070백만 유로로 2012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였음
- 다양한 교부금 중 일반경상교부금(DGF)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2004년에 교부금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부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일반경상교부금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의 교부금(꼬뮌 4개, EPCI 2개, 데빠르트망 4개, 레지옹 2개)으로 구성됨
 - 꼬뮌이 38%, EPCI가 20%, 데빠르트망이 29%, 레지옹이 13%를 각각 차지함

<표 4-14>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2016년 기준)

(단위: 백만유로)

항목	2012년	2016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소득에 대한 과세(PSR)		
일반경상교부금(DGF)	41,390	33,222
DGF를 위한 소득에 대한 과세	0	
교사들을 위한 특별교부금(DSI)	24	17
지방의회의원교부금	65	65
교육시설을 위한 레지옹교부금(DRES), 중학교시설 데빠르트망 교부금(DDEC), 교육건설과 시설을 위한 일반교부금(DGES)	990	990
부가가치세 배상기금(FCTVA)	5,507	6,047
유류제품에 대한 내륙세(TICPE)의 코르시카로의 이월	41	41
자연재해 피해 지방자치체를 위한 연대기금	0	0
통합을 위한 데빠르트망 동원 기금 (FMDI)	500	500
CET와 탄광 이용료의 손실에 대한 보상	59	25
사업세에 특별한 보상의 단일 교부금(DUCSTP)	447	163
지방세 면제에 대한 배상으로 국가 소득에 대한 과세	1,848	1,637
지방 직접세 면제 배상의 이전을 위한 교부금	875	629
빈 주택에 대한 조세 개혁의 배상교부금	-	4

망에 대한 재정지원), 121(레지옹에 대한 재정지원), 122(해의 영토령, 특별한 지원과 행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각 교부금의 배분에는 법적 기초, 분배방식(필요한 경우), 실제 액수 및 최근 참고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항목	2012년	2016년
Mayotte에 대한 조세 개혁 배상교부금	-	83
공항의 공해에 대한 배상 기금	-	7
교통세 의무 기업의 임계치 상승에 연결된 수입배상	-	79
사업세 개혁 배상교부금(DCRTP)	3,368	3,324
DCRTP/GIR 배상 - 조정	-	0
사업세의 데빠르트망 기금의 이월 보증 교부금	425	423
과세대상 조합의 수익 배상 교부금	40	0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수입에 대한 공제	55,579	47,256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RCT)에 대한 미션(mission)		
농촌영토지역의 설비교부금(DETR)	616	815
꼬뮌과 꼬뮌집단의 투자 지원 교부금	-	800
데빠르트망의 설비일반교부금(DGE)	224	216
분권일반교부금(DGD)	1,525	1,615
도시정책교부금(DPV, ex-DDU)	50	100
개인증명을 위한 교부금(DTS)	19	18
자치경찰의 재무관 교부금	1	1
기후 또는 지질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한 연대 교부금	0	28
어려운 꼬뮌에 대한 지원	4	2
해외영토 교부금	152	139
지방을 위한 다양한 공사(TDIL)	128	94
전체 미션(mission) RCT (DGCL 예산과 FIPD 제외)	2,718	3,828
국가의 재정 총 지원 (TDIL 제외)	58,169	50,990
기타 부처들의 다양한 보조금(e)	1,975	2,242
법적 규정에 따른 다양한 감면에 대한 보상	10,285	11,241
경찰벌금수입(지자체 반환 몫)	662	672
구조적 채무 기금(ETOX, 지불예산 기준)	-	200
조세 이전과 직업훈련교육을 제외한 총 이전	71,219	65,439
조세이전(직업훈련교육 제외)	27,451	31,745
DGD 직업훈련교육	1,702	-
직업훈련교육 범위 내에서 레지옹을 위한 재원	-	955
견습을 위한 레지옹에 대한 지원	555	1,932
CAS FNDMA	555	1,49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총 이전	100,927	100,070

자료 : République française(2017).

3. 지방자치단체간 자원분담 기준

가. 기본원리

- 프랑스는 법적 규정에 따라 레지옹, 데парта트망, 꼬뮌 등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협력이 이루어짐
 - 중앙정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수직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상관없는 수평적인 협력관계임
- 헌법 제72조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후견(tutelle)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꼬뮌, 데парта트망, 레지옹 간의 권한배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형태가 어떻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을 설정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후견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에 관한 2004년 7월 29일 조직법(Loi organique du 29 juillet 2004 relative à l’autonomie financiè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리더(chef de file)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리더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정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후견 금지 원칙의 존중)
 - ‘메트로폴 확인과 영토적 공공활동의 현대화를 위한 2014년 1월 27일 법(loi du 27 janvier 2014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d'affirmation des métropoles)'에 의해 확정되었음

- 레지옹의 리더 부문에는 경제개발, 교통수단 멀티모드의 통합과 보완, 생물 다양성과 에너지 전환, 기후 및 에너지, 혁신과 기업의 국제화 지원 등이 포함됨
 - 데빠르트망의 리더 부문에는 사회적 사업, 사회적 개발, 인간 자율성과 영토적 연대 등이 포함됨
 - 꼬뮌과 EPCI의 리더 부문에는 지속가능한 이동성, 밀착형 근접 공공서비스 조직화, 공간정비, 지방개발 등이 포함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은 금지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특수한 권한은 법률에 따라 인정됨
- 2013년 12월 12일 랑드 데빠르트망과 관련된 국사원 판결에서 공영이거나 위임된 서비스 관리에 따라 차별화되는 꼬뮌에 대한 보조금은 후견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기본법'의 자유행정에 관한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L. 1111-3조는 지방자치단체간 후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L. 1111-4-L.1111-10조는 자유행정의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 권한배분 및 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화하고 있음
 - '2010년 12월 16일 법' 제73조에 따라 레지옹과 데빠르트망은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이 정하는 권한배분에 따라 더 이상 개입이 불가능하며, 공유된 권한(관광, 문화, 스포츠 등)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게 됨
 - 동법 제76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레지옹과 데빠르트망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본법' L. 1111-10조에 명시하였음
- 원칙적으로 균형과 후견(운영총액보조금)을 위한 보조금은 금지됨

- 꼬뮌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만이 재건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균형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데빠르트망과 레지옹은 꼬뮌의 재정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
 - 꼬뮌에 대한 데빠르트망과 레지옹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간 공유된 권한의 영역과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됨
 - 예를 들어 남녀평등,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촉진, 레지옹 언어와 대중문화의 촉진, 학교와 취학 이전 시설에 대한 보조 등이 포함됨
- 한편 개별 사업에 대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감소를 고려하여 보조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L. 1111-9-1조의 V에 규정된 협력적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약의 틀 내에서 권한을 위임함
 - L. 1111-10조 III의 2번째 항에 규정된 시행자의 최소참여(participation minimale)는 공공법인에 의해 조달된 재원총액의 30%로 고정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Contrats de plan Etat-regions, CPER)과 수렴계약(contrat de convergence)⁹⁾에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 프로젝트들은 레지옹과 데빠르트망 모두 투자 및 운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 리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권한이 조정된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영토적 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참여 원칙에서 제외됨
 - 시행자의 최소참여는 지방자치단체기본법 L. 1111-10조에서 20%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기본법’ L. 1111-10조는 사업별 보조금의 부여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데빠르트망은 영토적 연대, 민간 주도가 실패하거나 없을 때, 농촌에서 주

9)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해외령 지자체들과 국가의 계약을 의미한다.

- 민들의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활동에 지원함(시행은 꼬뮌이나 EPCI가 담당함)
- 레지옹은 환경법의 특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함(시행은 꼬뮌이나 EPCI가 담당함)
 - 시행에 대한 최소참여는 20%임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법성은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음
- 순수한 사적 이해가 아닌 공공적 이해가 존재해야 함
 - 주민의 필요한 대한 대응 목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서비스 중립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
- 데빠르트망과 레지옹은 꼬뮌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을 모듈화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모듈화함에 있어서 승인이나 통제 관련 사항은 규정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없애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모듈화가 꼬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됨
 - 음용물이나 배수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보조금 모듈화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 데빠르트망과 레지옹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존중하여 보조금 부여 조건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음

<표 4-15> 지역간 협약유형에 따른 비용분담 현황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국가	레지옹	기타 지자체	합계
Massif의 레지옹간 협약	154.89 (42.55)	158.73 (43.61)	50.39 (13.84)	364.01 (100.00)
하천유역계획	430.81 (64.05)	241.83 (35.95)	-	672.63 (100.00)
세느강 계곡	240.91 (54.63)	200.08 (45.37)	-	440.99 (100.00)
총합	826.60 (55.94)	600.63 (40.65)	50.39 (3.41)	1,477.62 (100.00)

자료: 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2017).

4. 지방자치단체간 자원분담 사례: CPER 2015-2020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며,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역계획의 일부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을 도입하였음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각 레지옹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레지옹이 체결하는 6년 장기계약을 의미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레지옹의 공간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인프라, 고등교육, 지역산업, 연구개발, 농업지원, 보건,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의 목적은 국토의 설비수준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의 촉매제가 되는 것임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지역투자를 위한 지렛대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공급하며 EU 구조기금과 투자기금 등 다른 투자프로그램들과 상호 보완되어 집행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상의 결과물이자 협력수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 국토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결정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국가에 의해 수립된 국가정책방향과 레지옹의회가 정한 레지옹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조화를 추구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레지옹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함
 - 데빠르트망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체들은 레지옹과 함께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협상과정에 참여함
 - 중앙정부는 지방의 공공투자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국가 전체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의 자원조달을 안정적으로 보장함
 - 중앙정부는 농촌, 도시정책 우선지역 등 가장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지역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
 - 많은 레지옹에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EU 구조기금과 투자기금에 대해 국가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수단임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 2015-2020의 핵심 목표는 국가 내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국가와 레지옹은 1:1로 재원을 투입하고 국토균형위원회(Commissariat general a l'egalite des territoires)가 조정을 담당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 2015-2020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가와 레지옹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
 - 레지옹을 제외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은 전체의 1.88%에 불과함

<표 4-16>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 2015-2020의 비용분담 현황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국가	레지옹	기타 지자체	합계
고용	203.90 (43.00)	269.77 (56.90)	0.08 (0.02)	473.75 (100.0)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	1,528.88 (47.46)	1,660.14 (51.53)	32.54 (1.01)	3,221.55 (100.0)
혁신, 미래 산업, 미래 공장	47.56 (15.87)	251.80 (84.04)	0.24 (0.08)	299.61 (100.)
멀티모드 이동성	6,966.67 (46.05)	8,012.91 (52.97)	147.51 (0.98)	15,127.09 (100.0)
디지털	333.24 (33.45)	579.04 (58.13)	83.82 (8.41)	996.10 (100.0)
생태적 전환과 에너지	2,195.05 (50.99)	1,907.68 (44.32)	201.74 (4.69)	4,304.47 (100.0)
국토 부문	1,676.01 (38.65)	2,584.80 (59.61)	75.15 (1.73)	4,335.96 (100.0)
총합	12,951.31 (45.03)	15,266.14 (53.08)	541.07 (1.88)	28,758.52 (100.0)

자료: 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2017).



제 5 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개선방향

KRILA

제 5 장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 개선방향

제1절 기준부담률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1. 기준부담률 적용대상 및 범위

-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의 설정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기초간 배분에 있어서 기준부담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121개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과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여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명확한 자원분담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121개의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 사업 중 국비 100% 사업을 제외하고 68개 사업에 대한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광역, 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 광역, 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부담금 사업’의 경우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50%, 광역 25%, 기초25%의 비용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표 5-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기준

사업 번호	사업명	국가	특광역시	도
001	일반여권 발급	100		
002	119구조장비 확충	50	100	100
00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50	50
00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005	소하천 정비	50		
006	농어업기반 정비	80	50	50
007	배수 개선	100		
008	방조제 개·보수	50~100		
00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50	50
010	토양개량사업	70	50	50
0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0 ~ 50		
0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0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80~100	100	50
014	농기계임대사업	50		
0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00		
0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0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018	소규모 바다목장	50		
0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50~100		
020	푼겨름 작물 종자대금	50		
0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30 ~ 40		
0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사업 번호	사업명	국가	특광역시	도
023	농산물유통 개선	40	50	50
0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50~70	50	50
0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50~100	0	50
026	폐기물 처리시설	30~50		
027	삭제 <2016. 4. 28>	0		
0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50	30
0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50	50
0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31	하수처리장 확충	10~80	50	50
0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0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0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0~70		
0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0~80	50	50
0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100	100
0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정액	100	50
038	경전철 건설	정액		
0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0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100	100
041	대중교통 지원	90		
0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0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044	지방하천 정비	50		
0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046	도시철도 건설	40~60	100	0
047	산림병해충 방제	50~100	30	30
0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30	30
049	조림사업(造林事業)	50~60	30	30
050	숲 가꾸기	50	100	50
051	사방사업	70	70	70
0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0	50
0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0	50
0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0	50
055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056	임도시설	70	30	50
057	산림서비스 증진	50		

사업 번호	사업명	국가	특광역시	도
0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0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100	30
0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0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0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0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50	50
0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50	50
065	관광자원 개발	50		
0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0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30~50(70)		
0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50	50
0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070	청소년시설 확충	30~88		
0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50	50
0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0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100	50
0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100	50
0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30~50		
0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50~70	100	100
077	한센양로자 지원	50		
078	국가예방접종 실시	30~50		
0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30~50		
0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80	30~70	30~70
0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50~80	30~70	30~70
0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50~80		
0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50~80		
0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50~80		
0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50~80		
0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50~70	100	100
0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50~80		
0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50~70		
0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35~65		
0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0~80	100	50
0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사업 번호	사업명	국가	특광역시	도
0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50	50
0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094	긴급복지지원	50~80		
0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20~50	30~70	30~70
0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097	장애인활동 지원	50~70		
098	장애인연금	50~70		
0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의 3분의2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0	5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0	10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50		
110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기반 조성	6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30~70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50~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50~70	100	10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0~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50~70		
118	양로시설 운영	50~70	100	10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50~70	100	10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20~100		

- 둘째, 현재 규정되어 있는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이 설정되어 있는 111개 사업에 대한 실제 부담률을 검토한 결과 31개 사업이 기준부담률보다 낮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가 5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부담률은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이 설정되어 있는 111개 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이 설정되어 있는 111개 사업 중 39개 사업에 대한 실제 부담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들 사업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수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의 111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기준부담률에 규정과 실제 수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3년 또는 5년 주기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몰 여부를 판단하고 신규·변경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일본 야마나시현의 경우 매년 전체 국고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공개하고 있음
 - [부록 3]에 제시된 것처럼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부담비율(국가, 광역, 기초), 근거법령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셋째,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

- 는 국고보조사업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재원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재원분담 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근거 부재로 12개 시·도는 자체방침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시·도는 국비 50%와 시·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이와 유사한 ‘하수처리시설 지원’,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시·도에서 50%의 시·도비 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하천의 관리주체가 도지사라는 측면에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예산지원에 광역적 접근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인천, 대구, 경기, 전북 등은 해당 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실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역-기초간 재원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3년 또는 5년 단위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기준부담률 개선(안)

가. 사무 성격에 따른 재원분담 기준 설정

- 개별 사무의 성격에 따라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시·도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중앙-지방간 또는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재원분담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선행연구 및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음
- 첫째, 선행연구 및 법령 등에 제시된 다양한 사무배분 기준 중 대표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임
 - 이 연구에서는 편의의 파급효과와 광역적 통일성을 대표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시·도 사무 유형은 크게 파급효과와 광역적 통일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도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진 사무와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 기준들도 대체적으로 파급효과와 광역적 또는 전국적 통일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사용료·수수료의 부담률에 관한 노세 테쓰야(1981)의 연구에서도 사용료·수수료의 부담기준을 수혜대상의 범위(파급효과)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편익의 파급효과는 해당 사무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개인 또는 1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전체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됨
- 광역적 통일성은 해당 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표준적·통일적 측면에서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광역적 통일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사무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함

<표 5-2> 사무 성격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1(예시)

기준		광역적 통일성		
		낮음	보통	높음
편익의 파급효과	1개 기초자치단체	0%	20%	40%
	일부 기초자치단체	30%	50%	70%
	광역자치단체	60%	80%	100%

- 둘째, 선행연구 및 법령 등에 제시된 다양한 사무배분 기준들을 모두 활용하여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임
- 파급효과, 국가시책사업 여부, 사업주체, 사업비규모, 광역적 통일성, 공공재적 성격 등 다양한 사무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사업의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함
- 사업내용 및 성격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부합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며, 최종 점수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기준부담률을 설정함

<표 5-3> 사무 성격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2(예시)

기준	점수
파급효과	0 1 2 3 4 5 6 7 8 9 10
국가시책사업 여부	0 1 2 3 4 5 6 7 8 9 10
사업주체(광역자치단체 여부)	0 1 2 3 4 5 6 7 8 9 10
사업비규모	0 1 2 3 4 5 6 7 8 9 10
광역적 통일성	0 1 2 3 4 5 6 7 8 9 10
연계·조정 필요성	0 1 2 3 4 5 6 7 8 9 10
공공재적 성격	0 1 2 3 4 5 6 7 8 9 10

나. 사무 유형에 따른 자원분담 기준 설정

- 개별 사무에 대해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들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부담률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 광역, 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가-광역-기초간 자원분담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사무에 대해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본 사례처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개별적인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계획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부담률을 계약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사무에 대한 기준부담률과 동일 사업군 또는 사업 유형에 대한 기준부담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2-track)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별 사무의 수준에서는 광역-기초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기준부담률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 다수의 개별적인 사무를 포함하는 동일 사업군 또는 사업 유형의 수준에서는 법률에 광역-기초간 기준부담률을 설정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부담률(예를 들면 50%)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노인복지 관련 세부사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광역-기초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 즉, 개별적인 노인복지 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노인복지 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임

제2절 차등보조율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는 광역-기초간 재원분담에 있어서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 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가 기준부담률 보다 많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음으로 동 규칙 제2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의 부담수준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인천은 2개, 경기도는 3개의 인하보조율 구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은 다수의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3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기초간 재원분담에 있어서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인상보조율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의 조례는 인하보조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이 차등보조율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생각됨
 -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광역-기초간 차등보조율 적용에 있어서 인상보조율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애보호비 지급등)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p>	<p>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p> <p>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p>	<p>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p> <p>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5)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군·구 단위)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 (수첩의 발급 등) 29)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마. 국민건강 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보건진료 기관의 설치·운영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역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야.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p>	<p>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p>	<p>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3)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4)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p>	<p>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p>	<p>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p>
<p>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p>	<p>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p>	<p>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타.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p>	<p>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p>	<p>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p>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늪지·보(洑) 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p>	<p>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p> <p>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p>	<p>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운영</p> <p>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농업자재의 관리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용자금 관리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바. 공유림관리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남별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아. 가축전염병 예방</p>	<p>등 수립·조정 4) 종축장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p>	<p>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p>
<p>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p>	<p>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p>	<p>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p>
<p>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p>	<p>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p>	<p>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카. 중소기업의 육성</p>	<p>수립·추진</p> <p>3) 소비자 계몽과 교육</p> <p>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p> <p>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p> <p>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p> <p>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p> <p>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p> <p>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p> <p>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p> <p>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p> <p>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p> <p>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p> <p>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p> <p>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p>	<p>지정·관리</p> <p>3) 물가지도 단속</p> <p>4) 소비자 계몽과 교육</p> <p>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p> <p>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p> <p>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p> <p>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p> <p>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p> <p>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p> <p>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p> <p>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p> <p>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p> <p>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p> <p>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p>
<p>타. 지역특화 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p>	<p>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p> <p>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p> <p>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p> <p>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p>	<p>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p> <p>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p> <p>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p> <p>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과.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p>	<p>위한 연구 및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p>개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수립·시행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3) 토산품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p>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개발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p>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다.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p>	<p>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p> <p>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p> <p>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p> <p>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p> <p>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p> <p>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4)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도의 경우는 제외 한다)</p> <p>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p> <p>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p> <p>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p> <p>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p> <p>9) 무허가건축물 단속</p> <p>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p>
<p>라.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p>	<p>1) 도로관리계획 수립</p> <p>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p> <p>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p>	<p>1)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p> <p>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p> <p>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 선</p> <p>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마.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7) 광고물 정비·단속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사. 자연보호 활동</p>	<p>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p> <p>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p> <p>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p> <p>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p> <p>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p> <p>7)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p> <p>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p> <p>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p> <p>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p> <p>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p> <p>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p> <p>6) 자연보호계획 수립</p> <p>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p> <p>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p> <p>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p> <p>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p> <p>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p> <p>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p>	<p>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p> <p>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p> <p>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p> <p>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p> <p>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p> <p>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p> <p>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p> <p>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p> <p>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p> <p>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p> <p>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p> <p>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p> <p>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p> <p>10) 자연보호 지도·계몽</p> <p>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자갈채취단속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리 6) 하천감시
<p>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p> <p>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p> <p>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p> <p>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조정</p> <p>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p>	<p>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p> <p>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p> <p>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p> <p>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p> <p>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p> <p>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p> <p>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p> <p>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p>
<p>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p> <p>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p> <p>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p> <p>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p> <p>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p> <p>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p>	<p>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p> <p>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p> <p>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p> <p>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p> <p>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p> <p>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 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타. 지방궤도 사업의 경영</p>	<p>7) 관광휴양지의 관리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p>	<p>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13)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p> <p>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p>	<p>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운영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p> <p>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p> <p>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p> <p>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p> <p>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p> <p>14) 대규모 소매점 개설 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p> <p>15) 도매센터 개설허가</p> <p>16) 연쇄화 사업자 지정</p> <p>17)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p>	<p>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3) 시장 개설허가</p> <p>14) 시장관리자 지정</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p> <p>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p> <p>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p>	<p>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p> <p>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p> <p>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p>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라.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p>마.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p>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p>나. 지역의 화재예방·경 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p>운영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 부록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

구분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50	50
7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50	50	50	50
10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 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 정비	50	50	50	50
16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50	50
19	밭기반 정비	50	50	50	50
20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1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양개량 사업	50	50	50	50
24	대구회경지 재정리	50	50	50	50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 사업	50	50	50	50
27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구분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28	축산물 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50	50
33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37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연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구분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 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구분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77	시·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78	2종 어항 건설	100	0	100	0
79	어장 정화	0	0	30	70
80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100	0	100	0
86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50	50
88	종묘 매입·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 건조	100	0	50	50
91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 대책	30	70	30	70
97	조림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구분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06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50	50
108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10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0	100	0

【 부록 3. 일본 야마나시현의 국고지출금 부담비율 사례 】

1) 사회보건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후 생 노 동 성	생활곤궁자 취로준비 지원 보조금	지역복지 수요파악에 필요한 사업 지역서비스 창출, 추진 도모에 필요한 사업 등	직접	1/2	1/2		1/2	2017년도 생활곤궁자 취로준비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 요강
	‘나의 일, 통째로’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지역력 강화 추진사업 다기관 협력을 통한 포괄적 지원체제구축	직접	3/4	3/4		1/4	2017년도 생활곤궁자 취로준비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 요강
	생활곤궁자 취로준비 지원사업비 보조금	자립지원프로그램 책정실시추진사업	직접	1/2	1/2		1/2	2017년도 생활곤궁자 취로준비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 요강
				3/4	3/4		1/4	
		생활보호 적정실시추진사업	직접	1/2	1/2		1/2	
		취로준비지원사업 일시생활지원사업 가계상담지원사업	직접	2/3	2/3		1/3	
		생활곤궁세대자녀 학습지원사업 기타 생활곤궁자 자립촉진 사업		1/2	1/2		1/2	
	1/2	1/2			1/2			
생활부조비 부담금	시가 지불하는 거주지 불명자 생활보호비	직접	4/4	3/4	1/4		생활보호법 제73조	
	시가 지불하는 피보호자 생활보호비	직접	3/4	3/4		1/4	생활보호법 제75조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의료부조비 부담금	시가 지불하는 거주지 불명자 생활보호비	직접	4/4	3/4	1/4		생활보호법 제73조
		시가 지불하는 피보호자 생활보호비	직접	3/4	3/4		1/4	생활보호법 제75조
	개호부조비 부담금	시가 지불하는 거주지 불명자 생활보호비	직접	4/4	3/4	1/4		생활보호법 제73조
		시가 지불하는 피보호자 생활보호비	직접	3/4	3/4		1/4	생활보호법 제75조
	생활곤궁자 자립상담 지원사업비 부담금	생활곤궁자의 복합적 문제에 관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조언, 자립촉진 도모	직접	3/4	3/4		1/4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제2조2항
		피보호자 자립촉진 도모를 위해 피보호자 취업지원 관련 상담, 정보제공	직접	3/4	3/4		1/4	생활보호법 제55조의 6
이직으로 주택을 잃거나 우려가 높은 생활곤궁자에게 집세상당의 주거확보 급부금 지급		직접	3/4	3/4		1/4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제2조3항	
현	행로병자 및 사망자 취급비 현부담금	행로병자·사망자 취급비	단독	10/10		10/10		행로병자·사망자 취급법 제5조, 13조
후 생 노 동 성	개호급부비 부담금	개호급부비에 대한 정률부담금	직접 단독	32.5/1 00	20/100 (직접) 15/100 (직접)	12.5/1 00 (단독) 17.5/1 00 (단독)	12.5/10 0 12.5/10 0	개호보험법 제121조 제123조 제124조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저소득자보험료경 감부담금	저소득자 제1호 개호보험료의 부담경감금	직접 단독	3/4	1/2	1/4	1/4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지역지원사업 교부금	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교부금 ①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②포괄적지원사업 및 임의사업	직접 단독	37.5/1 00 58.5/1 00	25/100 (직접) 39/100 (직접)	12.5/1 00 19.5/1 00	12.5/10 0 19,5/10 0	개호보험법 제122조의2 개호보험법 제123조 제3항, 제4항
	고령자사회활동추 진 사업비보조금	고령자지역복지추진사업	간접	2/3	1/3	1/3	1/3	縣고령자사회활동추진 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부담 경감제도대책비 보조금	저소득자(특히 생계곤란자)에 대해 생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이용자부담을 경감한 경우, 시정촌이 해당법인이 부담한 비용 일부를 조성	간접	3/4	1/2	1/4	1/4	개호보험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 縣개호보험서비스이용 자부담대책비 보조금교부요강
	장애자홈헬프 서비스 이용자지원조치사 업비 보조금	저소득 장애자시책을 통한 방문개호를 이용할 때 시정촌이 이용자부담을 감면	간접	3/4	1/2	1/4	1/4	개호보험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 縣개호보험서비스이용 자부담대책비 보조금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시민후견인양성추 진사업비 보조금	지역내 시민후견인 활동추진 목적으로 지원체제구축, 상담지원사업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간접	3/4	1/2	1/4	1/4	야마나시현 시민후견인 양성추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국민건강보험특정 건강검사,보건의지 도부담금	특정건강진단, 특정보건의도에 필요한 경비	직접 단독	2/3	1/3	1/3	1/3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의5
	생활곤궁자취로준 비지원사업비 보조금	지역생활지원사업실시 필요비용	직접	10/10	10/10			생활곤궁자취로준비지 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유족 및 재외가족원호사무 위탁사업비	특정중국잔류방인 지원급부실시기관 배치지원, 상담원고용경비	직접	10/10	10/10			지원·상담원 배치에 관한 실시요령
	요양급부비 부담금	국민건강보험사업에서 하는 의료급부 및 의료비지급에 필요한 비용, 후기고령자 지원금, 개호납부금 납부에 필요한 비용	직접	32/100	32/100		68/100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국민건강보험기반 안정사업비 부담금	저소득자 가입비율이 높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완화를 도모한 사업	단독	3/4		3/4	1/4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3 제2항 등
	국민건강보험보험 자지원사업비 부담금	보험료 경감대상인 일반피보험자 수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공비로 보전	직접 단독	3/4	1/2	1/4	1/4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4 제2항, 제3항 등
	국민건강보험 고액의료비공동 사업 부담금	고액 의료급부발생으로 보험자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보험제도	직접 단독	1/2	1/4	1/4	1/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현	후기고령자보험기반 안정화사업비 부담금	저소득자 보험료부담경감 위해 공비보전 필요경비	단독	3/4		3/4	1/4	고령자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제99조 외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국민건강보험 벽지의료확보대책 사업비 보조금	국민건강보험 직영진료소 보조분	단독	과소, 준과소 1/3 기타 1/4		1/3	2/3	야마나시현 국민건강보험사업장 려보조금교부요강
		의사파견사업 보조비	단독	1/3		1/3	2/3	
후 생 노 동 성	아동학대DV대책 종합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①市の 부인상담원활동강화 대책사업	직접	5/10 1/2 1/2 1/2 1/2	5/10 1/2 1/2 1/2 1/2 (③④ 縣보조 2/3)		5/10 1/2 1/2 1/2	아동학대,DV대책종합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교부요강
		②시정촌의 아동학대방지대책 지원사업						
		③市の 아동양호시설환경 개선사업						
		④시정촌의 지역보육지원 거점환경개선사업						
모 자 가 정 대 책 综 합 지 원 사 업 비 국 고 보 조 금	모자가정 자립지원 급부금사업	직접	3/4	3/4	1/4 町村분	1/4 市분	모자·부자·과부복지법 제31조, 31조의10, 42조, 45조 등	
	모자·부자 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사업	직접	10/10	10/10			모자가정 대책종합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요강	
	고등학교졸업인정시험합격지원 사업	직접	3/4	3/4	1/4 町村분	1/4 市분		
아동수당교부금 아동수당교부금縣 부담금	아동수당사업 피용자(0~3세미만) 피용자(3~중학교 수료전) 비피용자(중학교 수료전) 특례급부(중학교 수료전)	직접 단독	41/45 5/6 5/6 5/6	*37/45 2/3 2/3 2/3	4/45 1/6 1/6 1/6	4/45 1/6 1/6 1/6	아동수당법 제18조 1항,2항,3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아동부양수당급부비 국고부담금	아동부양수당급부사업	직접	1/3	1/3		2/3 市分	아동부양수당법 제21조
	아동보호조치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입소시설조치비 부담금	직접	3/4	1/2	1/4	1/4	
	보육대책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대기아동해소 촉진에 필요한 사업 조성	간접	2/3	1/3	1/3	1/3	야마나시현 보육대책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의료제공체제 시설정비 교부금	병아·병후아 보육시설정비사업	간접	0.33* 0.95	0.33* 0.95			의료법 제30조의4 등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비 보조금	방과후 아동수업 운영, 설치, 장애아 수락, 송영 등에 대한 보조	직접 단독	1/3	1/3	1/3	1/3	야마나시현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보육소정비 보조금		직접	1/2	1/2		2/4 市町村分	보육소 정비교부금 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안심아동기금 보육서비스 충실사업비 보조금	-보육소 긴급정비사업 -임대물건에 의한 보육소 정비사업 -인증어린이집 정비사업비 -가정내 보육 개수사업	간접	1/2 1/2 1/2 1/2	1/2 1/2 1/2 1/2		1/4 1/4 1/4 1/4	안심어린이기금관리운영요령 등
	재난피해 아동의 건강생활대책 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동일본대지진으로 보육료 및 아동입소시설 징수금감면 지원	간접	10/10	10/10			야마나시현 피해 아동 건강생활지원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아동·보육지원체 제정비 종합추진사업비 보조금	보육지원원 연수사업 직원질 향상, 인재확보 연수사업	직접	1/2	1/2		1/2	아동·보육지원체제정비 종합추진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요강
	아동후생시설 정비비 보조금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시정촌이 책정한 계획에 근거한 시설정비 보조	직접 단독	1/3	1/3	1/3	1/3	야마나시현 아동후생시설 정비비 보조금 교부요강, 아동보육지원정비교부 금 교부요강
내 각 부	아동후생시설 정비비 보조금	시정촌 아동보육지원사업계획에 근거한 방과후 아동수업 및 병아보육사업 실시를 위한 시설정비 보조	직접 단독	1/3	1/3	1/3	1/3	아동보육지원법 등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급부 부담금	교육표준시간 인정 및 보육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 인증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 급부	직접	이용자 부담액 을 제외하 고 10/10	1/2	1/4	1/4	아동보육지원법 등
	야마나시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비 지방단독 보조금		단독	1/2		1/2	1/2	야마나시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비 지방단독비용보조금 교부요강
	야마나시 보육안심보육추진 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보육소, 인증어린이집에 간호사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1/2 보조	간접	1/2	1/4	1/4	1/2	야마나시 보육안심보육 추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현	아동·보육지원교 부금 아마나시현 지역아동·보육사 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지역아동·보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직접 단독	1/3	1/3 ※국가 부담분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시정촌에 직접 교부금	1/3	1/3	아동보육지원교부금 교부요강 등
	아마나시현 보육소특별보육사 업추진비 보조금	산후, 육후이후 특별보육추진위해 보육사고용 경비조성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유유아의료비조성 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지급하는 유유아의료비조성금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유유아의료대책사 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심사지불기관에 위탁하는 의료비 심사지불사업 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유유아의료지급사 무비 보조금	시정촌 국민건강보험국보부담금 감면에 상당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한부모가정의료비 조성사업비 보조금	유유아의료비 현물급부(국민건강보험국고부담 금 감면 상당) 경비보조	단독	1/2		1/2	1/2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야마나시현 한부모가정의료비 지급사업비 보조금	한부모가정 의료비조성사업	단독	1/2		1/2	1/2	
	야마나시현 한부모가정의료대 책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심사지불기관에 위탁하는 의료비 심사지불사무 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야마나시 보육지원사업 보조금	한부모가정 의료비 현물급부 보조	단독	1/2		1/2	1/2	
	야마나시 보육지원사업 보조금	둘째이후 3세미만아 보육료 무료화 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후 생 노 동 성	장애자자립지원급 부비 부담금	장애자 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자립지원급부	직접	3/4	1/2	1/4	1/4	장애자자립지원급부비 국고부담금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장애자자립지원급부비 부담금교부요강
	특별장애자수당 급부비 국고부담금	특별장애자수당, 장애아복지수당, 복지수당(경과조치분) 급부사업	직접	3/4	3/4	1/4 町村분	1/4 市分	특별아동부양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 등
	지역생활지원사업 비 보조금	지역생활지원사업	직접	3/4	1/2	1/4	1/4	지역생활지원사업비 보조금 및 장애자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급부요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장애아 입소급부비 부담금 및 장애아 입소의료비 부담금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아 통원급부	직접	3/4	1/2	1/4	1/4	장애아입소급부비 부담금 및 장애아입소의료비 부담금 교부요강
	장애자의료비 부담금	장애자 자립지원의료(갱생의료, 요양개호) 급부사업	직접	3/4	1/2	1/4	1/4	장애자 의료비 국고부담금 교부요강 등
	벽지의료거점병원 운영비 보조금	벽지의료거점병원 운영비	간접	2/2	1/2	1/2		의료시설운영비 보조금 및 중독정보기반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등
	인구동태조사 시정촌 교부금	인구동태조사사무	간접	10/10				국민생활기반조사 위탁비 교부기준
	의료시설 시설정비비 보조금 의료시설 설비정비비 보조금	벽지의료거점병원 시설정비사업	간접	2/2	1/2	1/2		의료시설 시설정비비 보조금 교부요강
		과소지역 특정진료소시설 정비사업	간접	3/4	1/2	1/4		
		벽지의료거점병원 설비정비사업	간접	2/2	1/2	1/2		의료시설 설비정비비보조금 교부요강
		벽지순회진료차 정비사업	간접	2/2	1/2	1/2		
	과소지역 특정진료소 설비정비사업	간접	3/4	1/2	1/4			
	의료제공체제 추진사업비 보조금	병원군 윤번제 병원설비정비사업	간접	8/9	4/9	4/9	1/9	의료제공체제추진사업 비 보조금교부요강
	휴일야간급진료 체제정비비 보조금	재택당번의사 운영비	단독	1/2		1/2	1/2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소아구급의료체제 정비비 보조금	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구급의료체제 운영비 (약제대응사업, 연락조정사업은 단독사업)	간접	2/3	1/3	1/3	1/3	의료제공체제추진사업 비 보조금 교부요강 등
				1/2				
				2/3				
				1/2				
	간급구명사 의원실습 수락 촉진사업 보조금	간급구명사의 병원실습 수락 촉진사업	직접	2/2	1/2	1/2		의료제공체제추진사업 비 보조금교부요강
	수도수원개발시설 정비비 보조금	댐 등의 시설정비비 조성	직접	1/3	1/3		2/3	수도법 제44조 등
				1/2				
				1/2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및 간이수도시설 재해복구비 보조금	원거리도수 시설정비비	직접	1/3	1/3		2/3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및 간이수도시설 재해복구비 보조금교부요강	
			1/2					
			1/2					
간이수도시설정비 비 국고보조금	고도정수시설 정비비	직접	1/3	1/3		2/3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및 간이수도시설 재해복구비 보조금교부요강	
			1/2					
			1/2					
간이수도시설정비 비 국고보조금	수도미보급지역해소사업 간이수도재편추진사업 생활기반근대화사업	직접	1/4	1/4		3/4	수도법 제44조 등	
			1/3					
			4/10					
생활기반시설 내진화 교부금	간이수도시설 재정력지수 0.3이하 시정촌	간접	1/4	1/4		3/4	생활기반시설내진화 교부요강	
			1/3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수원지역대책특별사업		4/10	4/10		6/10	
		음료수공급시설		4/10	4/10		6/10	
		긴급시 급수거점확보사업	간접	1/4	1/4		3/4	
		수도관로 내진화추진사업	간접	1/4 1/3	1/4 1/3		3/4 2/3	
	야마나시현 수도수원개발시설 비 보조금	댐 및 이들시설과 밀접한 관련있는 시설건설에 필요경비	단독	국고보 조금의 2/10	30/90 (45/90)	6/90 (9/90_)	54/90 (36/90)	야마나시현 수도수원개발시설정비 비 보조금교부요강
		국고보조사업 채택된 고도정수시설경비 보조대상시설 건설경비	단독	국고보 조금의 2/3	30/90 (30/120)	20/90 (20/120)	40/90 (70/120)	
	공중욕장시설 개선비 보조금	공중욕장 시설개선사업 비용보조하는 시정촌을 현이 간접보조금 교부	단독	1/2		2/3	1/3	야마나시현 공중욕장시설개선비보 조금 교부요강
	감염증예방사업비 국고부담(보조)금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심사 방문지도, 종합적 보건추진사업	간접	2/3	1/3	1/3	1/3	건강증진법
	예방접종대책비 부담금	건강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급부	간접	3/4	2/4	1/4	1/4	예방접종법
	야마나시현 소아만성특정질환 아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비 보조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 재택의 소아만성특정질환아에 대해 시정촌이 일상생활용구를 급부하는 사업 보조	간접	1/2 (복지사 무소 설치)	1/2		1/2	소아만성특정질환아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실시요강
3/4 (복지사 무소 미설치)				1/2	1/4	1/4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장애자의료비 국고부담금	자립지원의료비(육성의료) 지급 필요비용	직접	3/4	1/2	1/4	1/4	장애자의료비국고부담 금 교부요강
	미숙아양육의료비 국고부담금	미숙아 양육의료 급부 필요비용	직접	3/4	1/2	1/4	1/4	미숙아양육의료비 국고부담금 교부요강
	모자보건위생비 국고보조금	임신,출산 포괄지원사업	직접	1/2	1/2		1/2	모자보건위생비 국고보조금 교부요강
현	중도심신장애자 의료비조성비사업 비 보조금	중도심신장애자 의료비조성사업비, 지급사무, 의료대책사업비	단독	1/2		1/2	1/2	
	복지택시시스템사 업비 보조금	택시요금 보조	단독	1/2		1/2	1/2	
		리프트 부대차량 설치 보조	단독	1/2		1/2	1/2	
	야마나시현 개호용 자동차구입 조성사업비 보조금	개호용 자동차구입 조성사업	단독	1/2		1/2	1/2	
	야마나시현 지역자살대책강화 사업비 보조금	필요성이 높은 자살대책	간접	10/10	10/10			(지역자살대책강화교부 금)
	난청아 보청기구입사업비 보조금	경도, 중도 난청아에게 보청기구입비용 조성	단독	1/2		1/2	1/2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코후市 구급의료센터 운영비 보조금		단독	1010		10/10		
	후지요시다市 간호전문학교 운영비 조성금		단독	2/5		2/5	3/5	
	야마나시현 자립지원의료비 (육성의료)부담금	자립지원의료비(육성의료) 지급 필요 비용	단독	3/4	1/2	1/4	1/4	야마나시현 의료비부담금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양육의료비 부담금	미숙아 양육의료 급부 필요비용	단독	3/4	1/2	1/4	1/4	야마나시현 양육의료비 부담금 교부요강
	임신출산육아 포괄지원사업비 보조금	지역의 보육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촌이 임신기~보육기까지 종합상담사업 실시 경비	단독	1/3	1/3	1/3	1/3	야마나시현 임신출산육아 포괄지원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수도수원개발 시설정비비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에 채택된 수도수원개발시설사업 대상 중, 수원개발용 댐 및 이들 시설과 관련 있는 시설건설에 필요경비	단독	국고보 조금의 2/10	30/90 (45/90)	6/90 (9/90)	54/90 (36/90) 기업단 및 시정촌	야마나시현 수도수원개발시설정비 비 보조금 교부요강 (*보조율은 국고보조금의 2/3을 넘어 정액 경우 有)
		국고보조사업에 채택된 고도정수시설정비비 보조대상인		국고보 조금의	30/90 (30/120)	20/90 (20/120)	40/90 (70/120)	*자본단가 74엔 이상, 급수원가 112엔 이상일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수도광역화시설 건설 경비		2/3			기업단 및 시정촌	경우
			국고보 조금의 1/2	30/90 (30/120)	15/90 (15/120)	45/90 (75/120)	기업단 및 시정촌	*자본단가 74엔 이상, 급수원가 112엔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산림환경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환경성	순환형사회형성 추진 교부금	시정촌이 광역적 지역에 관해 작성하는 '순환형사회형성추진지역계획' 에 근거해 실시하는 정화조설치에 필요경비 조성	직접	1/3	1/3		1/3 (정화조 시설정비 사업)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등
	지역창생 오수처리시설정비 추진 교부금	시정촌이 작성하는 '지역재생계획'에 근거해 실시하는 정화조 정비 관련 조성	직접	1/3	1/3		1/3 (정화조 시설정비 사업)	지역재생법 등
	재해폐기물 처리사업비 조성금	시정촌이 재해를 위해 실시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분관련 사업에 국가가 보조	직접	1/2	1/2		1/2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비 조성금	시정촌이 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재해복구사업을 국가가 보조	직접	1/2	1/2		1/2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형사회형성추 진 교부금	시정촌이 작성하는 '순환형사회형성추진지역계획' 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설정비사업에 관해 국가가 교부	직접	1/3	1/3		2/3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등
	방사성물질오염폐 기물처리사업비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어 새롭게 발생한	직접	1/2	1/2		1/2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조성금	오염폐기물로, 시정촌이 실시하는 농림업계 폐기물 처리사업에 국가가 보조						
	이산화탄소배출억 제대책사업비 교부금	‘순환형사회형성추진지역계획’에 근거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	직접	(고효율 에너지회 수설비) 1/2 (기타) 1/3	1/2 1/3		나머지 금액	
현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환경보존, 창조관련 계획 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비보조금교부요강
	정화조설치사업비 보조금	정화조설치자에 대해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해 설치경비 조성	단독	1/3		1/3	1/3	아마나시현정화조 설치경비사업 보조금교부요강
	불법투기미연방지 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불법투기물방지펜스, 불법투기물 철거를 현이 보조	단독	1/2		1/2	1/2	불법투기물미연방지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일반폐기물최종처 분장 정비촉진대책사업 비 보조금	최종처분장 입지 시에 ①도로정비사업 ②지역진흥지시설정비사업을 현이 보조	단독	①10/10 ②1/2		①10/10 0 ②1/2	1/2	일반폐기물최종처분장정비촉진대책사업 비 보조금교부요강
	일반폐기물최종처 분장주변지역정비	최종처분장 입지 시 교부금의 재원에 대해 현이 자금을 대부	단독	1/010		10/10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사업교부금 자금부대							
	특정조수 적정관리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제2종 특정조수관리계획에 근거해 실시하는 관리포획 필요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특정조수적정관리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신규수렵자확보대 책사업비 보조금	수렵면허 신규취득자, 총포소지허가 신규취득자에 대해 취득경비 일부 조성사업 보조	단독	1/2		1/2	1/2	신규수렵자확보대책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임 야 청	소나무재선충 종합대책사업비 보조금	소나무재선충사업(비공공) 예방, 구제	간접	3/4	2/4	1/4	1/4	삼림병해충 방제법 등
	소나무재선충 재해지역대책사업 비 보조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공공) 구제	간접	7/10	5/10	2/10	3/10	삼림병해충 방제법 등
	조림사업비 보조금	조림사업, 식재, 간벌 등	간접	4/10	3/10	1/10	6/10	삼림법 등
	삼림소유자정보활 용추진사업비 보조금	임야대장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 GIS신규도입 및 개수경비 조성	간접	1/2	1/2		1/2	삼림법 등
	삼림·임업재생기 반만들기 교부금	목조공공시설 정비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 등	간접	1/2 이내	1/2		1/2	목조공공시설정비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현	소나무재선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단독)	단독	3/4		3/4	1/4	아마나시현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피해림 경관대책사업비 보조금	공공)예방, 구제						소나무재선충 재해종합대책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임야청	임지붕괴방지사업 보조금	‘격심피해 대처위한 특별재정원조 관련 법률’로 지정된 격심재해로, 취약과 인접한 임지에 붕괴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필요시설 신설 경비	간접	3/4 이내	2/4 이내	1/4 이내	1/4 이내	임지붕괴방지사업실 시요강 등
충무성	목재자원 활용추진사업비 보조금	품질조사지원	간접	3/4 이내			1/4	지방창생추진교부금 교부요강 등
현	카이지역 목재 사용하기 추진사업비 보조금	지역목재를 사용한 책상, 나무 등 도입	단독	1/2 이내		1/2	1/2	아마나시현 카니목재사용하기 추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임 야 청	삼림·임업재생기 반만들기 교부금	목조공공시설 정비 등	간접	1/2 이내	1/2		1/2	목조공공시설정비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등
	임지붕괴방지사업 보조금	‘격심피해 대처위한 특별재정원조 관련 법률’로 지정된 격심재해로, 취약과 인접한 임지에 붕괴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필요시설 신설 경비	간접	3/4 이내	2/4 이내	1/4 이내	1/4 이내	임지붕괴방지사업실 시요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임도시설재해복구 사업 보조금	임도시설 재해복구사업	간접	오지 65%이상 기타 50%이상	65% 이상 50% 이상		35%이하 50%이하	농림수산사업시설재 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 잠정설치에 관한 법률,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관한 법률 등
	임도재해관련사 업 보조금	재해복구 제고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에 포함된 일련의 신설시설, 개량 관련사업	간접	오지 55%이상 기타 50%이상	55% 이상 50% 이상		45%이하 50%이하	국가는 예산보조,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관한 법률 등
	지방창생 길정비추진교부금 (임도개설사업)	삼림기간도 정비	간접	50.50%	50%	0.50%	49.50%	지역재생법 등
삼림관리도 정비 삼림사업도 정비 삼림전용도 정비		일반 45.50% 과소 50.50%		45% 50%	0.50% 0.50%	54.50% 49.50%		
작업포인트 정비, 연락로 정비		45.50%		45%	0.50%	54.50%		
	아름다운 삼림만들기 기반정비 교부금	임도 개설, 개량	간접	50.50%	1/2	0.50%	49.50%	삼림간별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지방창생 길정비추진교부금 (임도개량사업)	임도개량사업 간선 기타	간접	50.50% 30.50%	50% 30%	0.50% 0.50%	49.50% 69.50%	지방재생법 등
	지방창생 길정비추진교부금 (임도포장사업)	임도포장사업 간선 기타		50.50% 33.83/10 0	50% 1/3	0.50% 0.50%	49.50% 66.17/10 0	지방재생법 등
	재해관련 산지재해위험지구 대책사업 보조금	재차 재해방지 및 임지보전상 필요시설 설치를 재해복구사업과 병행해 긴급히 복구,정비하는 사업	간접	70/100 이내	50/100	27.5/1 00 이내	국가, 현 보조금 제한 액	해재관련산지재해위 험지구대책사업실시 요강 등
	임지황폐방지시설 재해복구사업 보조금	산림법에 근거 관래되는 시설 이외 시설의 재해복구사업	간접	65%	65%		35%	농림수산업시설재해 복구사업비 국고보조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

3) 산업노동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현	야마나시현 상점가활력재생지 원사업비 보조금	시정촌 보조하는 사업경비 일부 보조	단독	1/3		1/3	1/3	야마나시현 상점가활력재생지원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야마나시현 '매연대'활동촉 진사업비 보조금	지역주민 니즈에 응하여 상점과 상점가가 지역과 연계한 '매연대'사업 보조	단독	1/3		1/3	1/3	야마나시현 매연대활동촉진사업 비 보조금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시정촌 공업단지정비촉진 사업 보조금	공단정비기초조사사업	단독	1/2		1/2	1/2	야마나시현 시정촌 공업단지정비촉진사 업보조금교부요강
	야마나시 관광진흥시설정비 보조금	지역관광 필요시설 정비	단독	1/2		1/2	1/2	야마나시 관광진흥시설정비 보조금교부요강
경제 산업성	그린에너지자동차 도입촉진대책비보 조금	연료전지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교부(직접보조)	직접	2/3	2/3			그린에너지자동차도 입촉진대책비 보조금교부요강
국토 교통성	지적조사사업비 부담금	지적조사사업	간접	3/4	2/4	1/4	1/4	국토조사법에 따른 지적조사비부담금교 부요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농림 수산성	중산간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중산간지역 경작방치지 발생방지 및 다면적기능 확보 목적으로 교부금 지급	간접	3/4 2/3	1/2 1/3	1/4 1/3	1/4 1/3	야마나시현 중산간지역 직접지불교부금 교부요강
	농림경영구조대책 사업비 보조금	조건불리지역 보조형 경영체육성지원사업	간접	1/2 이내	1/2 이내			야마나시현 농업경영구조대책사 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야마나시 농업농촌종합지원 사업비 보조금	농촌농업활성화와 관계된 시설정비 조성	단독	1/2 이내		1/2 이내		야마나시 농업농촌종합지원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농지유지·자원향 상활동추진비 보조금	농지유지, 자원향상활동 지원사업	간접	3/4 정액	1/2 정액	1/4	1/4	야마나시현 농지유지, 자원향상활동지원사 업 경비보조교부요강
현	토지개량사업 보조금	기업적 농지경영추진지원모델 사업	단독	1/2 이내		1/2 이내		야마나시현 토지개량사업조성금 교부요강
		경작방치지 재생정비지원사업		1/2 이내		1/2 이내		
	야마나시 Linkage농원이용 촉진사업비 보조금	Linkage농원 설치,개량 조성	단독	1/2		1/2		야마나시 Linkage농원이용촉진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농림 수산성	야마나시 과수산지시설정비 사업비 보조금	공동이용시설 정비	간접	1/2 이내	1/2이내			야마나시 과수산지시설 정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야채산지강화대책 추진사업비 보조금	산지강화조건정비사업	간접	1/2 이내	1/2 이내			야채산지강화대책추 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기업진입형 야채산지강화사업 비 보조금	기업진입형 야채산지강화사업	간접	1/2 이내	1/2 이내			기업진입형 야채산지강화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식품유통합리화대 책사업비 보조금	도매시장시설정비	간접	1/3 이내	1/3 이내			야마나시현 식품유통합리화대책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재해농업공동이용 시설 복구사업비 보조금	집하,출하,저장시설 정비	간접	1/3 이내 1/2 이내	1/3 이내 1/2 이내			피해농업공동이용시 설복구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농축산물 수출확대시설정비 사업비 보조금	집하,출하,저장시설 정비	간접	1/2 이내	1/2 이내			농축산물수출확대시 설정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6차산업화시설정 비사업비 보조금	6차산업화 네트워크구축활동 프로젝트	간접	3/10 이내	3/10 이내			야마나시현 6차산업화시설정비사 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6차산업화 네트워크활동지원 사업비 보조금		간접	1/3 이내	1/3 이내			야마나시현 6차산업화네트워크활 동지원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야마나시 산지파워업사업비 보조금	야마나시 산지 파워업 사업	간접	1/2 이내	1/2 이내			야마나시 산지파워업사업비보 조금 교부요강
현	피해하우스복구지 원사업비 보조금	피해하우스 재배복구사업	단독	1/3 이내		1/3 이내	1/3 이내	피해하우스 복수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과일왕국 야마나시 취농지원사업비 보조금	고향에서 취농한 자제가 신규확대되도록 필요기기 설비 경비 일부 조성	단독	1/3		1/6	1/12	보조금교부요강
농림 수산성	피해농가경영자금 이자보급 보조금 (천재자금)	이자보급 보조사업	간접	3/4~ 33/40	1/2~ 13/20	1/4~ 7/40	1/4~ 7/40	천재에 의한 피해농림업자 대한 자금융통관련 보조금교부규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조수피해방지종합 대책사업비 보조금	피해방지시설정비에 관해 시정촌 조수피해대책협의회, 시정촌에 보조금 교부	간접	1/2	1/2			조수피해방지종합대 책사업비보조금교부 요강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구온난화방지, 생물다양성보전에 효과높은 영농활동 보급·확대 목적	간접	3/4	1/2	1/4	1/4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보조금 교부요강
	경영체육성지원사 업비 보조금	지역농영마스터플랜에 있는 중심경영체 등이 용자활용시, 경비일부를 시정촌 통해 조성	간접	3/10 이내	3/10 이내			보조금교부요강
	농촌진흥종합정비 사업 보조금	농촌종합정비	간접	75/100	50/100	25/100	25/100	야마나시현 토지개량사업 보조금교부요강
	농업집락배수사업 보조금	농업진흥지역 농업용배수 수질보전, 기능유지	간접	50/100	50/100		50/100	
단체경영토지개량 사업비 보조금		조사설계사업	간접	50/100	50/100		50/100	
		농산어촌진흥교부금		55/100	55/100		45/100	
		농업기간정비촉진사업		50.5/100	50/100	0.5/10 0	49.5/100	
		농지경작조건개선사업		55.5/100	55/100	0.5/10 0	45.5/100	
	산촌진흥 농림어업특별대책 사업비 보조금	농산어촌진흥교부금	간접	1/2~ 3/10	1/2~ 3/10		1/2	야마나시현 산촌진흥 농림어업특별대책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농지방재사업비 보조금	저수지 정비사업	간접	75/100	50/100	25/100	25/100	야마나시현 토지개량사업 보조금교부요강
현	토지개량조성비 보조금	조수피해방제사업	단독	30/100		30/100	70/100	
		특산농산물생산지원정비사업	단독	50/100		50/10	50/100	
		농지집적기반정비사업	단독	12/5/100		12.5/ 100		
내각부 (농림 수산성)	지방창생 길정비추진교부금	광역영농단체 농도정비사업	간접	90/100	50/100	40/100	10/100	지역재생법

4) 현토정비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국토교통성	세계문화유산경관 형성지원사업비 보조금	세계문화유산 구성 보전관리구역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	단독	1/2 시정촌사 업		1/2	1/2	예산보조	
	사회자본정비종합 교부금	시정촌 길정비사업 등	직접	5/10~ 7/10	5/10~ 7/10		3/10~ 5/10	보조금 관련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내각부 (국토 교통성)	지방창생 길정비추진교부금	시정촌 길정비사업	직접	1/2	1/2		1/2	지방재생법 제13조	
국 토 교 통 성	하천재해관련사업 비 보조금	하천재해 관련사업	직접	1/2	1/2		1/2	공공토목시설재해복 구사업심사방침 등	
		하천재해 특정관련사업	직접	1/2	1/2		1/2	하천재해특정관련사 업실시요령	
		특정하천재해관련 환경재생사업	직접	1/2	1/2		1/2	하특정하천재해관련 환경재생사업실시요령	
	하천재해복구구성 사업비 보조금	하천재해관련특별대책사업	직접	4/10	4/10		6/10	하천재해관련특별대 책사업실시요령	
	사회자본정비종합 교부금	준용하천개수사업	직접	1/3	1/3			2/3	사회자본정비종합교 부금교부요령
		도시기반하천개수사업	직접	1/3	1/3	1/3		1/3	
유역저류침투사업		직접	1/3	1/3			2/3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하천재해복구사업 비 국고부담금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	직접	2/3 이상	2/3 이상		1/3	공공토목시설재해복 구사업비 국고부담법
	수방자재비 보조금	수방자재비 보조 특례	직접	2/3	23		1/3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관한 법률 제21조 등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효과촉진사업	직접	1/2	1/2		1/2	보조금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 관한 법률
		결절점 개축	직접	1/2	1/2		1/2	도로정비비 재원 특례에 관한 법률
		가로사업, 토지구획정비사업 등	직접	5/10~ 7/10	5/10~ 7/10		3/10~ 5/10	보조금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사업	직접	용지1/3 시설1/2	1/3 1/2		2/3 1/2	도시공원법
		도시재생정비계획 '①지역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②지역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직접	4/10 이내	4/10 이내		6/10 이상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도시방재종합추진사업	직접	1/2 (1/3)	1/2 (1/3)		1/2 (2/3)	도시재생추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정비계획작성	직접 단독	2/3	1/3	1/3	1/3	도시재생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시가지정비	간접	2/3	1/3	1/6	1/6	
	도시국소관 국고보조금 (지역연계도로사 업비 보조)	가로사업	직접	1/2	1/2		1/2	보조금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
	도시안전확보촉진 사업비 보조금	도시안전확보사업비	직접	중심 1/2 부대 1/3	1/2 1/3		1/2 1/3	도시안전확보촉진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현 (국토 교통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조금	국고보조금 받아 시정촌이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직접 단독	7.5/10 7.75/10	5/10 5.5/10	2.5/10 2.25/10	2.5/10 2.25/10	공공단체등 구획정리보조사업실 시요령 등
	조합토지구획정리 사업 보조금	국고보조금 받아 조합이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간접	10/10	6.5/10	1.75/10 (0)	1.75/10 (3.5/10)	조합등 구획정리보조사업실 시요령
국 토 교 통 성	사회자본정리 종합교부금	우수관거 설치	직접	1/2	1/2		1/2	하수도법 제34조
		종말처리장 설치		1/2 또는 5.5/10	1/2 또는 5.5/10		1/2 또는 4.5/10	
		우수관거, 종말처리장 내진화		1/2	1/2		1/2	
		우수관거, 종말처리장 개축갱신		1/2 또는 5.5/10	1/2 또는 5.5/10		1/2 또는 4.5/10	
		우수관거 설치		1/2	1/2		1/2	
		도시하수로 설치		4/10	4/10		6/10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내각부 (국토 교통성)	지방창생 오수처리시설정비 추진 교부금	오수관거 설치 종말처리장 설치	직접	1/2 1/2 또는 5.5/10	1/2 1/2 또는 5.5/10		1/2 1/2 또는 4.5/10	지방재생법 제13조
현	아마나시현 공공하수도보급촉 진비 보조금	오수관거 설치 종말처리장 설치	단독	교부금 대상 사업비의 2.5%이내 시정촌 단독 사업비 2.5%이내		10/10		아마나시현 공공하수도보급촉진 비 보조금교부요강
국 토 교 통 성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지역주택계획에 근거한 공적임대주택 정비, 관련 공공시설정비 사업	직접	4.5/10 이하	4,5/10 이하		5.5/10 이상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응한 공적임대주택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정촌이 공급하는 지역우량임대주택 건설비 보조	직접	4.5/10 이하	4,5/10 이하		5.5/10 이상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교부요강
		민간이 공급하는 지역우량임대주택 건설비 보조		시정촌 보조액의 4.5/10	시정촌 보조액 의 4,5/10		시정촌 보조액의 5.5/10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지구주민의 발의, 창의를 존중한 여유있는 시가지 형성 ①협의회 활동 조성사업 ②정비방침책정사업 ③거리정비사업 ④거리정비조성사업	직접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석면개수사업 실시하는 지자체 보조	직접	1/3 조사 10/10이 내	1/3 10/10이 내		2/3	
		주택건축물 내진진단, 내진설계, 내진개수사업 실시하는 지자체 보조	직접	1/2 1/3	1/2 1/3		1/2 2/3	
		지자체가 하는 협소도로정비 촉진사업 협소도로 폭정비사업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HW사업)	직접	1/2 1/3	1/2 폭정비 비용 1/3이상 & 지자체 보조액 1/2이내		1/2 1/3	
	사회자본정비종합 교부금	절벽붕괴 등으로 주민생명에 위험우려가 있는 구역의 위험주택 이전	직접	1/2	1/2		1/2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공적임대주택 집세대책조정 보조금	시정촌의 공적임대주택 집세감액에 관해 경비일부 보조	직접	1/2	1/2		1/2	공적임대주택집세대 책조정보조금 교부요강
	목조주택내진화수 요사업 보조금	개인의 목조주택내진개수에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해 보조	간접	37.5/100 50.0/100	시정촌 부담의 5/10	개수비 의 1/4 & 시정촌 보조액 1/2 & 30만엔 상한	임의	긴급목조주택‘우리집 내진화’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내진성향상형 개수지원사업 보조금		간접	50.0/100	시정촌 부담의 5/10	개수비 1/3 & 시정촌 보조액 1/2 & 60만엔 상한	임의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현	아마나시현 석면비산방지대책 사업비 보조금	석면개수사업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하는 시정촌 보조	단독	시정촌보 조액 1/4 이내 & 사업필요 비용 1/6 이내		시정촌 보조액 1/4 이내 & 사업필 요비용 1/6 이내. 단, 사업필 요경비 3천만 엔 상한	임의	아마나시현 석면비산방지대책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목조주택내진진단 지원사업 보조금	국가 교부제도에 근거해 시정촌이 행사하는 목조주택내진사업에 대해 보조	단독	사업필요 비용 1/4 이내		1/4	1/4	긴급목조주택'우리집 내진진단'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목조주택내진개수 설계지원사업 보조금	국가 교부제도에 근거해 민간목조주택 내진설계비 보조하는 시정촌 보조	단독	시정촌보 조 1/4이내 & 사업필요 비용 1/6이내		1/6	1/6	주택내진개수설계지 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절벽근접위험주택 이전사업 보조금	절벽붕괴로 인해 주민생명에 위험우려가 있는 구역의 위험주택 이전	단독	1/4		1/4		절벽근접위험주택이 전사업보조금 교부요령

5) 종합정책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사전합숙유치추진 사업비 보조금	도쿄올림픽 사전합숙 유치를 위해 상대국 교섭 등 지원하는 어드바이저 설치, 시찰관여 경비 조성	단독	1/2		1/2	1/2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사전합숙유치추진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야마나시현 위성오피스 정비사업비 보조금	빈집을 위성오피스시설로 정비해 IT기업 유치	단독	1/4	(1/2이내)	1/4이내	1/4이상	야마나시현위성오피 스정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국가: 사회자본정비종합교 부금)
	쾌적(甲斐適)주거이 주지원사업비 보조금	빈집뱅크에 등록된 물건을 현외이주자가 계약한 경우 장려금지급하는 시정촌 조성	단독	1/2		1/2	1/2	쾌적주거이주지원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실험주택정비촉진 지원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의 빈집활용 실험주택 정비 조성	단독	1/4	(1/2)	1/4	1/4	실험주택정비촉진지 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국가: 사회자본정비종합교 부금)
법무성	인권개발활동 지방위탁사업	지역인권개발활동활성화사업	간접	10/10	10/10			인권개발활동지방위 탁요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내각부	2017년도 지역저출산대책중 점추진교부금(국가) 2017년 지역저출산대책 중점추진사업비 보조금(縣보조금)	우량사례 횡적전개사업 메뉴, 결혼신혼생활지원사업 메뉴	간접	사업1 1/2 사업2 3/4	사업1 1/2 사업2 3/4			지역저출산대책중점 추진교부금교부요강(국가, 현)
총무성, 농림 수산성, 경산성, 문부성, 소비자청	각종조사, 센서스 조사 교부금	국세조사, 주택토지통계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경제센서스조사, 농림업센서스, 공업통계, 상업통계, 학교기본조사 (총 11개) 아마나시현소비자행정추진교 부금 시정촌사업비 보조금	간접	10/10	10/10			국세조사령 등

6) 리니어교통국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현	아마나시현 생활버스노선 유지비 보조금	광역, 간선노선에 준하는 생활교통노선에 관해 조성조치 강구하는 시정촌에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생활버스유지비 보조금교부요강
	아마나시현 시정촌 자주운영버스 보조금	현민생활에 필요한 버스노선 운행확보를 위해 폐지노선대체버스를 운영하는 시정촌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시정촌자주운영버스 보조금교부요강
	아마나시현 철도통학지원에 따른 인구전출억제실 증사업비 보조금	철도이용으로 현외 대학에 통학하는 자에게 통학정기권 구입비용 조성하는 시정촌 보조	단독	1/2 이내		1/2	1/2	아마나시현 철도통학지원에 따른 인구전출억제실증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개인현민세징수 취급비 교부금	시정촌이 개인현민세 부과징수 사무 위한 비용 보상(일반재 교부금)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47조 외
	이자할 교부금	현민세 이자할 시정촌교부금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71조26 외
	배당할 교부금	현민세배당할 시정촌교부금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71의47 외
	주식등 양도소득할 교부금	현빈세주식 양도소득할 시정촌교부금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71의67 외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지방소비세 교부금	지방소비세 시정촌교부금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72조5 외
	골프장이용세 교부금	골프장소재시정촌 관련시설정비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103조 외
	자동차취득세 교부금	자동차취득세 시정촌교부금	단독	10/10		10/10		지방세법 제143조 외
	현유자산소재시 정촌 교부금	현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	단독	10/10		10/10		국유자산소재시정촌 교부금법
내각부	지방창생추진교 부금	지방관 종합전략에서 정한 지역재생계획에 근거한 사업실시 경비를 국가가 보조	직접	1/2	1/2			지역재생법 등
총 무 성	과소지역등 자립활성화추진 교부금	과소지역 집락재편정비사업, 과소지역 유희시설재정비사업, 파급성 있는 소프트사업 지원, 과소지역 집락네트워크권 형성 지원	직접	1/2 1/3 정액 정액	1/2 1/3 정액 정액		1/2 2/3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추진교부금교부요강
	지역경제순환창 조사업 교부금	지역의 경제순환창조를 국가가 지원	직접	10/10 1/2 2/3 3/4	10/10 1/2 2/3 3/4		1/2 2/3 3/4	지역경제순환창조사 업 교부금교부요강
	사회보장·稅번호 제도시스템정비	주민기본대장시스템, 지방세무시스템,	직접	10/10 2/3	10/10 2/3		1/3	사회보장·세번호제도 시스템정비비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비 보조금	중간서버, 단체내 통합명 시스템, 통합이용번호 연계서버		10/10 10/10	10/10 10/10			보조금교부요강
	개인번호카드교 부사업비/사무비 보조금		직접	10/10	10/10			개인번호카드교부사 업비/사무비 보조금교부요강
	지역공공네트워 크 강진화사업비 보조금	방송네트워크 정비지원사업	직접	1/2	1/2		1/2	
	방송네트워크 정비지원사업비 보조금	4k,8k시대에 대응한 케이블TV광화촉진사업	직접	1/2	1/2		1/2	
	무선시스템보급 지원사업비 보조금	공공무선랜 환경정비지원사업	직접	1/2 2/3	1/2 2/3		1/2 1/3	무선시스템보급지원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휴대전화 에리어 정비사업	간접	7/10 4/5	1/2 2/3 1/3	1/5 2/15 11/30 1/30	3/10 1/5	
		민방라디오 난청해소사업	직접	2/3	2/3		1/3	
	정보통신기반정 비추진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이 있는 지자체가 광케이블 초고속브로드밴드 정비 실시시 사업비 일부 보조	직접	1/3	13		2/3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국토교 통성	방재집단이전축 진사업비 보조금	자연재해발생한 지역, 위기구역 주거의 집단이동 보조	직접	3/4	3/4		1/4	방재집단이전축진사 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집락활성화추진 사업비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에 각종서비스의 유지확보 위해 기존공공시설 활용한 시설정비 보조	직접	1/2이내	1/2이내		1/2	집락활성화유지사업 실시요령 등
방위청	자위관모집사무 지방공공단체 위탁비	자위관 모집사무	직접	10/10	10/10			자위대법 제97조제3항
소 방 청	긴급소방원조대 설비정비비 보조금	긴급소방원조대 관계설비	직접	1/2	1/2		1/2	긴급소방원조대 설비정비비 보조금교부요강
	소방방재시설정 비비 보조금	소방방재설비 정비사업 (과소, 산촌)	직접	1/2 1/3	1/2 1/3		1/2 2/3	소방방재시설정비비 보조금교부요강
	긴급소방원조대 활동비 부담금	소방청장관 지시를 받아 출동한 긴급소방원조대 활동	직접	10/10 (국가)				긴급소방원조대 활동비 부담금교부요강

7) 교육위원회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문 부 과 학 성	공립학교시설정 비비 부담금	교사 신증축사업	직접	1/2	1/2		1/2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옥내운동장 신증축사업	직접	1/2	1/2		1/2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통합교사 신증축사업	직접	1/2	1/2		1/2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환경개 선 교부금	위험건물 개축			1/3	1/3		2/3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부적격건물 개축사업			1/3	1/3		2/3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지진방재대책사업 (개축)			1/2	1/2		1/2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지진방재대책특별조 치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지진방재대책사업(보강)		1/2	1/2		1/2	의무교육 제학교 시설비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 대구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등
		장수명화 개량사업		1/3	1/3		2/3	의무교육제학교 시설비 국고부담금에 관한 법률
		대구모개조(노후)사업		1/3	1/3		2/3	
		대구모개조(질적정비) 사업		1/3	1/3		2/3	
		학교통합개조사업		1/2	1/2		1/2	
		옥외교육환경정비사업		1/3	1/3		2/3	
		나무교실환경시설정비사업		1/3	1/3		2/3	
		지역,학교연계시설정비사업		1/3	1/3		2/3	
		벽지교직원주택 신증축사업		1/2	1/2		1/2	
		유치원원사 신증축사업		1/3	1/3		2/3	
		학교건물 공해방지공사사업		1/3	1/3		2/3	
		산업교육시설정비사업		1/3	1/3		2/3	
		방재기능강화사업		1/3	1/3		2/3	
		태양광발전 정비사업		1/2	1/2		1/2	
	공립학교건물 기타재해복구비 부담금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직접	2/3	2/3		1/3	공립학교시설재해복 구비 국고부담금법
	이과교실설비정 비비 보조금	이과,산수,과학 관련설비정비 경비보조	직접	1/2	1/2		1/2	이과교육진흥법 외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벽지아동학생원 조비 보조금	스쿨버스, 보트 구입비	직접	1/2	1/2		1/2	벽지교육진흥법
		기숙사설비정비비		1/2	1/2		1/2	
		원거리통학비		1/2	1/2		1/2	
		기숙사거주비		1/2	1/2		1/2	
	유치원취원장려 비 보조금	보호자의 경제적부담경감 위해 시정촌이 실시하는 취원장려사업 경비 보조	직접	1/3	1/3		2/3	보조금교부요강
	요보호아동학생 원조비보조금 및 특별지원교육취 학장려비 보조금	경제적이유로 취학곤란이 인정된 학생 및 예정자의 보호자에게 필요원조시 경비보조	직접	1/2 1/2	1/2 1/2		1/2 1/2	취학곤란 아동 및 학생에 관한 취학장려에 관한 국가원조 법률 등
	아마나시현 재해유아아동학 생 취원취학지원사 업비 보조금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하여 취원, 취학이 곤란해진 유아아동학생 보호자에 대한 원조사업 보조	간접	10/10	10/10			보조금교부요강
현, 문부과 학성	학교운영협의회 설치추진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학교운영협의회 설치추진사업 보조	간접 단독	2/3 2/3	1/3	1/3 2/3	1/3 1/3	학교운영협의회설치 추진사업비 보조금교부요령
문부과 학성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교부금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0/10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고등학교 취학지원사업비 보조금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0/10			보조금교부요강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 보조금(장학위한 급부금)	수업이외 교육비에 경제적 부담경험 위해 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세대에 광역이 장학급부금 지급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3	2/3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 보조금(가계급변 세대 지원)	취학지원금 소득기준(시정촌민세 소득할액 304,200엔 이상) 해당하고 취학지원금을 받지 않는 학생이 가계급변상황으로 수입이 격감한 경우 취학지원금에 반영될때까지 동안 지자체가 수업료 감면조치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2	1/2	1/2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보조 금 교부요강
	방과후어린이교 실 추진사업비 보조금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추진	간접	2/3	1/3	1/3	1/3	아마나시현 방과후어린이교실추 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학교시설환경개 선 교부금	지역스포츠센터 신개축	직접	1/3	1/3		2/3	스포츠기본법 등
수영장 신개축(일반)		1/3		1/3		2/3		
수영장 신개축(정수형)		1/2		1/2		1/2		
옥외스포츠센터 신개축		1/3		1/3		2/3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옥외운동장조명 신개축		1/3	1/3		2/3	
		학교클럽하우스 신개축		1/3	1/3		2/3	
		사회체육시설 내진화		1/3	1/3		2/3	
		수영장 상옥 신개축		1/3	1/3		2/3	
		중학교 무도장 신개축		1/3	1/3		2/3	
		급식개시 필요시설 정비		1/2	12		12	
	요보호아동학생 원조비 보조금	취학원조	직접	1/2	1/2		1/2	학교보건안전법, 학교급식법 등
	벽지아동학생원 조비 보조금	의사, 치과 의사 파견	직접	1/2	1/2		1/2	벽지교육진흥법
		벽지학교심장검진사업	직접	1/3	1/3		2/3	
	지역모두의 학교안전체제정 비추진사업비 보조금	지역이 함께 효과적 지속적인 아동안전확보를 위한 체제정비	간접	2/3	1/3	1/3	1/3	지역모두의 학교안전체제정비추 진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등
운동부활동고문 임용사업비 보조금	지도교원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퇴직교원 등 지역인재를 비상근으로 임용해 공립중학교에 배치	간접	6/0	2/9	4/9	3/9	운동부활동고문임용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등	
문화청 (현)	국보중요문화재 보조정비비 보조금	건조물, 미술품 보존수리사업 및 방재시설 정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직접 단독	75/100~ 92.5/100	(직접) 50/100 ~ 85/100	(단독) 25/100 ~ 7.5/100	12.5/100 ~ 3.75/100	문화재보호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사적구입비 보조금	사적 매입	직접 단독	90/100	(직접) 80/100	(단독) 10/100	10/100	
현	문화재보존사업 비 보조금	문화재수리사업, 방재시설사업 등	단독	75/100		50/100	25/100	야마나시현 문화재보존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무형민속문화재 보존사업비 보조금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조금	단독	75/100		50/100	25/100	야마나시현 무형문화재보존사업 비 보조금교부요강

【 부 록 4. 일본 「개호보험법」 상의 국가·광역·기초 간 비용부담 규정 】

介護保険法 <第八章 費用等 第一節 費用の負担>	개호보험법 <제8장 비용 등 제1절 비용부담>
<p>(国の負担)</p> <p>第二百一十一条 国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対し、介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費用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一 介護給付（次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及び予防給付（同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要する費用 百分の二十</p> <p>二 介護給付（介護保険施設及び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に係るものに限る。）及び予防給付（介護予防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に係るものに限る。）に要する費用 百分の十五</p> <p>2 第四十三条第三項 第四十四条第六項 第四十五条第六項 第五十五条第三項 第五十六条第六項又は第五十七条第六項の規定に基づき条例を定めている市町村に対す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に規定する介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は、当該条例による措置が講ぜられ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当該介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に相当する額とする。</p>	<p>(국가의 부담)</p> <p>제121조 국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에 관해,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비용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p>一 개호급부(다음호에서 열거하는 것은 제외) 및 예방급부(동호에서 열거하는 것은 제외)에 필요한 비용 20/100</p> <p>二 개호급부(개호보험시설 및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 및 예방급부(개호예방특정시설입거자 생활보호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에 필요한 비용 15/100</p> <p>2 제43조제3항, 제44조제6항, 제45조제6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6항 또는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근거해 조례를 정한 시정촌에 대한 전항(前項)의 규정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지용액은, 당해조례에 따르는 조치가 강구되지 못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당해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p>
<p>(調整交付金等)</p> <p>第二百二十二条 国は、介護保険の財政の調整を行うため、第一号被保険者の年齢階級</p>	<p>(조정교부금 등)</p> <p>제122조 국가는 개호보험의 재정조정을 할 때, 제1호 피보험자의 연령계급별 분포상</p>

介護保険法 <第八章 費用等 第一節 費用の負担>	개호보험법 <제8장 비용 등 제1절 비용부담>
<p>別の分布状況´ 第一号被保険者の所得の分布状況等を考慮して´ 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市町村に対して調整交付金を交付する°</p> <p>2 前項の規定による調整交付金の総額は´ 各市町村の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介護給付及び子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 同項の規定を適用して算定した額° 次項において同じ°）の総額の百分の五に相当する額とする°</p> <p>3 毎年度分として交付すべき調整交付金の総額は´ 当該年度における各市町村の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介護給付及び子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の見込額の総額の百分の五に相当する額に当該年度の前年度以前の年度における調整交付金で´ まだ交付していない額を加算し´ 又は当該前年度以前の年度において交付すべきであった額を超えて交付した額を当該見込額の総額の百分の五に相当する額から減額した額とする°</p> <p>第百二十二条の二 国は´ 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市町村に対し´ 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に要する費用の額の百分の二十に相当する額を交付する°</p> <p>2 国は´ 介護保険の財政の調整を行うため´ 市町村に対し´ 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に要する費用の額について´ 第一号被保険者の年齢階級別の分布状況´ 第</p>	<p>황, 제2호 피보험자의 소득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p> <p>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은 각 시정촌의 전조(前條)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동조 제2항의 규정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액. 다음항에서도 동일)의 총액의 5/10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p> <p>3 매년도분으로 교부해야하는 조정교부금 총액은, 당해년도의 각 시정촌의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 예상액 총액의 5/100에 해당하는 액에, 당해연도의 전년도 이전년도의 조정교부금에서 아직 교부되지 않은 액을 가산하거나 당해 전년도 이전년도에 교부해야했던 액을 초과해 교부한 액을 당해예상액 총액의 5/100에 상당하는 액에서 감액한 액으로 한다.</p> <p>제122조의2 국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에 필요한 비용액의 20/100에 상당하는액을 교부한다.</p> <p>2 국가는 개호보험 재정조정을 할 때, 시정촌에 대해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에 필요한 비용액 총액의 5/10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p>

介護保険法 <第八章 費用等 第一節 費用の負担>	개호보험법 <제8장 비용 등 제1절 비용부담>
<p>一号被保険者の所得の分布状況等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額を交付する°</p> <p>3 前項の規定により交付する額の総額は、各市町村の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に要する費用の額の総額の百分の五に相当する額とする°</p> <p>4 国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対し、地域支援事業（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を除く°）に要する費用の額に、第百二十五条第一項の第二号被保険者負担率に百分の五十を加えた率を乗じて得た額（以下「特定地域支援事業支援額」という°）の百分の五十に相当する額を交付する°</p> <p>第百二十二条の三 国は、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市町村によるその被保険者の地域における自立した日常生活の支援、要介護状態等となることの子防又は要介護状態等の軽減若しくは悪化の防止及び介護給付等に要する費用の適正化に関する取組を支援するため、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対し、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交付金を交付する°</p> <p>2 国は、都道府県による第百二十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支援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事業に係る取組を支援するため、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に対し、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交付金を交付する</p>	<p>3 전하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액의 총액은 각 시정촌의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에 필요한 비용액 총액의 5/10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p> <p>4 국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지역지원사업(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을 제외)에 필요한 비용액에, 제125조제1항의 제2호 피보험자부담율에 50/100을 더한 율을 곱해 얻은 액(이하 특정지역지원사업지원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액을 교부한다.</p> <p>제122조의3 국가는 앞의 2조에서 정하는 바 외에, 시정촌에 의한, 피보험자의 지역자립의 일상생활 지원, 요개호상태 등의 예방 또는 요개호상태 등의 경감 혹은 악화방지 및 개호급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한다.</p> <p>2 국가는 도도부현에 의한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계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한다.</p>

介護保険法 <第八章 費用等 第一節 費用の負担>	개호보험법 <제8장 비용 등 제1절 비용부담>
<p>都道府県の負担等)</p> <p>第百二十三条 都道府県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対し、介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費用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一 介護給付（次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及び予防給付（同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要する費用 百分の十二・五</p> <p>二 介護給付（介護保険施設及び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に係るものに限る。）及び予防給付（介護予防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に係るものに限る。）に要する費用 百分の十七・五</p> <p>2 第百二十一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介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について準用する。</p> <p>3 都道府県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対し、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に要する費用の額の百分の十二・五に相当する額を交付する。</p> <p>4 都道府県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対し、特定地域支援事業支援額の百分の二十五に相当する額を交付する。</p>	<p>(도도부현의 부담 등)</p> <p>제123조 도도부현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에 관해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비용구분에 따라 당해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p>一 개호급부(다음호에 열거하는 것은 제외) 및 예방급부(동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에 필요한 비용 12.5/100</p> <p>二 개호급부(개호보험시설 및 특정시설입거자 생활보호에 관계된 것에 한정) 및 예방급부(개호예방특정시설입거자 생활보호에 관계된 것에 한정)에 필요한 비용 17.5/100</p> <p>2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부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에 관해 준용한다.</p> <p>3 도도부현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에 필요한 비용액의 12.5/100에 상당하는 액을 교부한다.</p> <p>4 도도부현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특정지역지원사업지원액의 25/100에 상당하는 액을 교부한다.</p>
<p>(市町村の一般会計における負担)</p> <p>第百二十四条 市町村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一般会計において、介</p>	<p>(시정촌 일반회계의 부담)</p> <p>제124조 시정촌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개호보험 및 예방급부</p>

介護保険法 <第八章 費用等 第一節 費用の負担>	개호보험법 <제8장 비용 등 제1절 비용부담>
<p>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の百分の十二・五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2 第二十一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介護給付及び予防給付に要する費用の額について準用する°</p> <p>3 市町村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一般会計において、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に要する費用の額の百分の十二・五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4 市町村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一般会計において、特定地域支援事業支援額の百分の二十五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에 필요한 비용액의 12.5/100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p>2 제121제2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개호보험 및 예방급부에 필요한 비용액에 관해 준용한다.</p> <p>3 시정촌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 사업에 필요한 비용액의 12.5/100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p>4 시정촌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정지역지원사업지원액의 25/100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p>(市町村の特別会計への繰入れ等)</p> <p>第二百二十四条の二 市町村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会計から、所得の少ない者について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行う保険料の減額賦課に基づき第一号被保険者に係る保険料につき減額した額の総額を基礎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額を介護保険に関する特別会計に繰り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国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る繰入金金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3 都道府県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繰入金金の四分の一に相当する額を負担する°</p>	<p>(시정촌 특별회계에의 이월 등)</p> <p>제124조 二 시정촌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소득이 적은 자에 관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보험료감면부과에 근거해 제1호 피보험자에 관계되는 보험료에 관해 감액한 액의 총액을 기초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액을 개호보험에 관한 특별회계에 이월해야만 한다.</p> <p>2 국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금의 1/2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p>3 도도부현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월금의 1/4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p>

【 부록 5. 환경 관련 시설의 광역-기초간 자원분담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

현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
- 경기도는 지방재정 악화로 `14년부터 행안부 규칙 상 지방비 부담률 명시 사업(111개) 외에는 도비지원 중단

문제점

-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비 중 도비지원 근거가 없어 시·군 재정부담을 야기, 신규사업 기피 및 사업규모 축소
※ 신규사업 축소 : 48건(‘11~’13, 도비지원)→ 23건(‘14~’19, 지원중단)
- 지방비 부담률 미정사업은 지자체 간 협의·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도 재정부담으로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사실상 지원배제 상황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도비지원근거 부재로 12개 시·도는 자체방침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
- 하천의 연속성과 관리주체(도지사) 감안,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예산지원에 광역적 접근 필요

개선방안

-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3번 사업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항목 신설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33	환경 관련 시설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신설	- 생태하천복원사업			30	70
신설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30	70